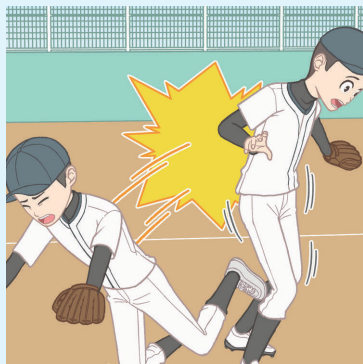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중앙회 - 2026 - 09

학교안전 중대사고 사례집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정 훈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성장해야 할 학교는 무엇보다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이는 학교를 이루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대 학교안전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한 학생의 삶과 가정, 그리고 학교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고는 숫자로 남지만, 그 안에는 지워지지 않는 아픔과 무거운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고를 단순한 사후 처리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차분히 되짚어 보고, 그 원인을 살피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중대사고를 돌아보는 일은 곧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안전 중대사고 사례집」은 이러한 목적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실제 공제급여가 지급된 중대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사고의 경위와 유형, 교육 활동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고, 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예방방안과 안전 수칙을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사례 모음집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과 교훈을 정리하여 실질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가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중대사고는 갑자기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위험이 충분히 살펴지지 못한 결과일 수 있으며, 이에 사소해 보이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고 기본을 지키며, 안전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를 꾸준히 이어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례집이 학교와 교직원 여러분께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교육청에서도 학교안전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례집 발간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시·도학교안전공제회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현장의 교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학교안전 공제중앙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정 훈

목 차

◆ 제 1 장 일러두기

1. 발간 목적	12
2. 사례집 구성 및 내용	12
가. 사례집 구성	12
나. 사례집 주요 내용	13
다. 용어해설	13

◆ 제 2 장 학교안전사고 사례

1. 유치원·초등학교	20
2. 중학교	34
3. 고등학교	54

◆ 부 록

86

사 례 목 차

유치원 · 초등학교

- | | |
|-------------------------------------|----|
| 1. 교실에서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지며 안구 손상 | 22 |
| 2. 피구 경기 관람 중 바닥에 튕 공에 눈 부상 | 23 |
| 3. 운동장에서 뛰어가다가 넘어지며 철봉에 이마를 부딪쳐 부상 | 24 |
| 4. 볼펜 등이 연결된 막대 파편이 분리되며 날아와 눈 부상 | 25 |
| 5. 피구를 하다가 상대방이 던진 공에 눈을 맞아 안구 부상 | 26 |
| 6. 복도 모퉁이에서 마주오던 친구와 부딪쳐 머리 부상 | 27 |
| 7. 얼굴에 댄 손가락에 눈을 찔려 부상 | 28 |
| 8. 복도에서 놀이를 하던 중 넘어져 발목이 바닥에 부딪혀 골절 | 29 |
| 9. 친구와 장난하다가 엉켜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 | 30 |
| 10. 교실에서 친구와 장난을 하다가 발가락 골절 | 31 |
| 11. 피구공을 피하다가 옆의 친구와 엉켜 넘어져 척추 골절 | 32 |
| 12. 체육시간에 손을 짚지 않고 앞구르기를 하다가 목 부상 | 33 |

중 학 교

- | | |
|------------------------------------|----|
| 13. 배드민턴 중 스매싱한 셔틀콕에 눈 부상 | 36 |
| 14.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져 다리 골절 | 37 |
| 15. 책상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다가 손가락 골절 | 38 |
| 16. 친구와 간지럽히며 장난을 치다가 뒤로 넘어져 허리 골절 | 39 |

17. 장마로 바닥이 미끄러운 복도에서 넘어져 다리 골절	40
18. 친구가 다리를 걸어 넘어지면서 무릎 골절	41
19. 자전거를 타고 하교 중 바퀴에 가방이 걸려 넘어져 얼굴 부상	42
20. 등굣길에 구조물 위에 올라가다가 넘어져 얼굴 부상	43
21. 복도에서 혼자 물구나무를 서다가 넘어져 쇄골 골절	44
22. 플라스틱 구조물에 올라간 슬라이퍼를 가지러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등 부상	45
23. 배구 스파이크 착지 과정에서 네트에 걸리며 무릎 부상	46
24. 체육시간에 제자리 멀리뛰기 중 미끄러져 무릎 부상	47
25. 축구 골대 그물에 걸려 넘어져 고관절 골절	48
26. 복도에서 미끄러지면서 손으로 짚은 유리창이 깨져 손목 베임	49
27. 강한 바람에 의해 문이 닫히면서 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	50
28. 요리 수업시간에 냄비가 미끄러져 쏟아진 뜨거운 물에 다리 화상	51
29. 과학실에서 불꽃 반응 실험 중 불꽃이 튀어 손 화상	52
30. 공을 잡기 위해 담장을 넘다가 허리 부상	53

고 등 학 교

31. 스파이크 점프를 하며 이동 중 구조물에 눈 부상	56
32. 캐치볼 훈련 중 공에 눈을 맞아 부상	57
33. 허들을 넘다가 무릎이 부딪혀 꺾이며 부상	58
34.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다가 담장에 충돌하며 머리 등 부상	59
35. 야구 연습 중 배트의 끝부분을 맞고 날아온 공에 눈 부상	60
36. 풋살 경기 중 얼굴로 날아오는 공을 막다가 손가락 골절	61
37. 태권도 훈련 중 상대방 발차기에 무릎을 부딪쳐 부상	62

38. 야구 훈련 중 다른 선수와 충돌하며 무릎 부상	63
39. 농구 경기 중 점프했던 상대편 학생에게 깔리며 요추 골절	64
40. 등굣길에 무릎이 꺾이며 시멘트 바닥에 넘어져 무릎 부상	62
41. 축구를 하다가 운동장 바닥에 걸려 넘어져 무릎 부상	66
42. 계단에서 계단 높이보다 발을 더 높게 올리다 접질리며 무릎 부상	67
43. 공을 잡으려다가 펜스가 파손되며 튕겨나가 머리 부상	68
44. 계단에서 발을 헛디더 굴러 요추 등 골절	69
45. 축구를 하다가 공을 밟아 넘어지며 허리 골절	70
46. 축구를 하다가 트랙 주변 보도블럭에 축구화가 끼어 넘어져 발목 골절	71
47. 축구를 하다가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무릎 부상	72
48. 하굣길에 뛰어가다가 발을 헛디더 넘어져 다리 골절	73
49. 등교 중 발목이 꺾이며 보도블럭에서 떨어져 발목 골절	74
50. 단체줄넘기 밖으로 나가던 중 미끄러져 무릎 부상	75
51. 치어리딩 연습 중 텀블링 착지 과정에서 무릎 부상	76
52. 줄다리기 중 뒤에서 달려오던 학생이 충돌하면서 무릎 부상	77
53. 학교 담장에 걸린 소지품을 빼내려다가 담장에서 떨어져 다리 골절	78
54. 물기가 있어 미끄러운 복도에서 넘어져 무릎 부상	79
55. 풋살 경기 중 헤딩 착지 과정에서 부딪혀 넘어지면서 무릎 부상	80
56. 하교 중 언덕길에서 미끄러져 무릎 부상	81
57. 풋살 경기 중 상대편과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져 무릎 부상	82
58. 기계체조 텀블링을 하다가 매트에 등으로 떨어져 척추 골절	83
59. 피구를 하던 중 넘어져 무릎 부상	84
60. 소이캔들 실습 중 비커가 깨져 허벅지 등 화상	85

학교안전 증대사고 사례집

제 **1** 장

일러두기

일 러 두 기

1. 발간 목적

본 사례집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중대사고(총 보상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고)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공유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사고 예방과 학교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사례집 구성 및 내용

가. 사례집 구성

학교안전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당시의 학교급에 따라 사례를 구분하였습니다. 사고내용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와 함께 사고 내용을 제공하며, 각 사고 사례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사례집 구성 >

구분	내용
사고 개요	• 사고제목 • 사고정보 - 학교급 및 학년 - 사고형태 : 부딪힘, 끼임·눌림, 낙상, 굽힘·베임·절단·찢림, 스스로 신체에 충격을 가함(염좌·삔임), 열, 전기에 의한 손상, 화학물질 노출, 식중독 및 이물질 섭취, 접촉, 그 밖의 손상 사고
사고 경위	• 사고 발생 당시 상황과 세부 내용 요약 • 삽화를 통해 사고상황 이해도 제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유사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을 간략히 제시

나. 사례집 주요 내용

본 사례집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따라 2023년, 2024년에 1,000만원 이상 보상된 학교안전사고를 분석하여 60건의 주요 학교안전사고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각 사례의 내용은 실제 학교안전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용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상황이나 내용은 재구성되었습니다. 사례집 활용 시에는 각 학교의 특성이나 환경, 학생 연령 등을 고려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례의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은 「2024 학교안전교육 콘텐츠(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학교 안전공제중앙회, 2024)」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간략하게 재구성 하였습니다.

< 학교안전사고 사례 구성 >

구분	사례 수
유치원·초등학교	12
중학교	18
고등학교	30
계	60

다. 용어해설 (학교안전법 제2조)

◆ 학 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함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초·중·고등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

◆ 학생

-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 교직원

-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

◆ 교육활동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함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 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행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 교육활동참여자

-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 학교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참고] 최근 5년간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현황

구분	기준	비고
사고통계	각 연도별(1.1.-12.31.) 사고접수일 기준	학교안전법 제44조
보상통계	각 연도별(1.1.-12.31.) 지급일 기준 ※ 동일사고로 동일연도에 여러 번 지급한 경우 1건으로 집계 (단, 급여종류가 다를 경우 각각 집계)	학교안전법 제41조

※ 학교급별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외국인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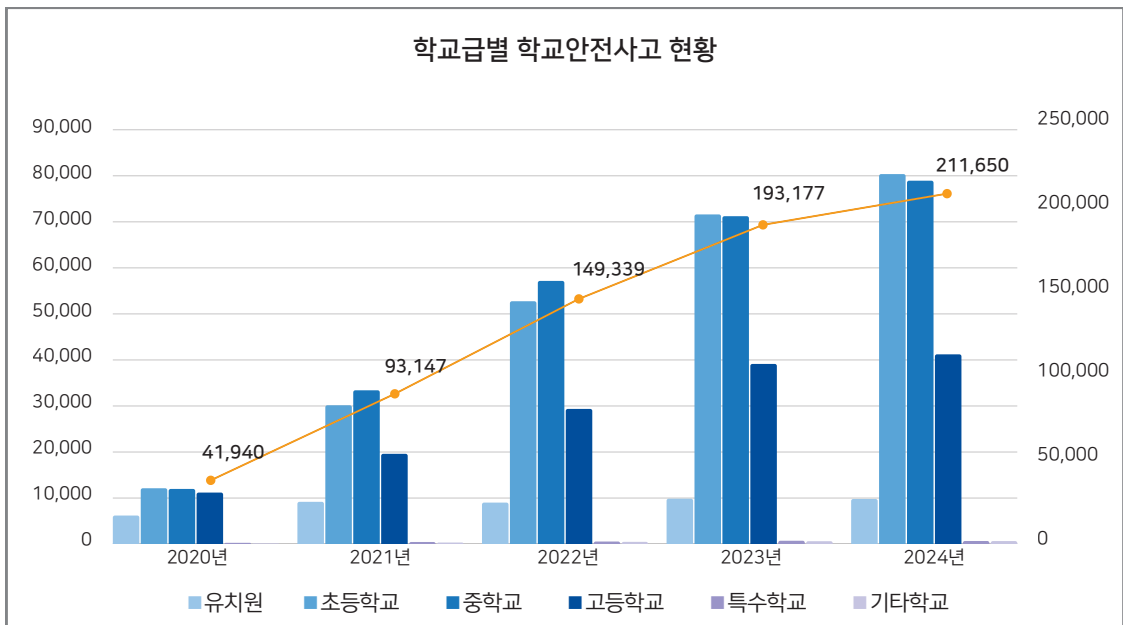
◆ 학교급별 학교안전사고 현황('20~'24)

(단위 : 건,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유치원	6,202	14.8	9,180	9.9	9,015	6.0	9,861	5.1	9,802	4.6
초등학교	12,128	28.9	30,154	32.4	52,751	35.3	71,608	37.1	80,369	38.0
중학교	11,981	28.6	33,405	35.9	57,168	38.3	71,223	36.9	78,935	37.3
고등학교	11,191	26.7	19,610	21.1	29,363	19.7	39,133	20.3	41,215	19.5
특수학교	276	0.7	458	0.5	557	0.4	726	0.4	672	0.3
기타학교	162	0.4	340	0.4	485	0.3	626	0.3	657	0.3
계	41,940	100	93,147	100	149,339	100	193,177	100	211,650	100

※ 1) 각 연도별(1.1.-12.31.) 사고접수일 기준 학교안전사고 접수건에 한함

2)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학교안전사고 대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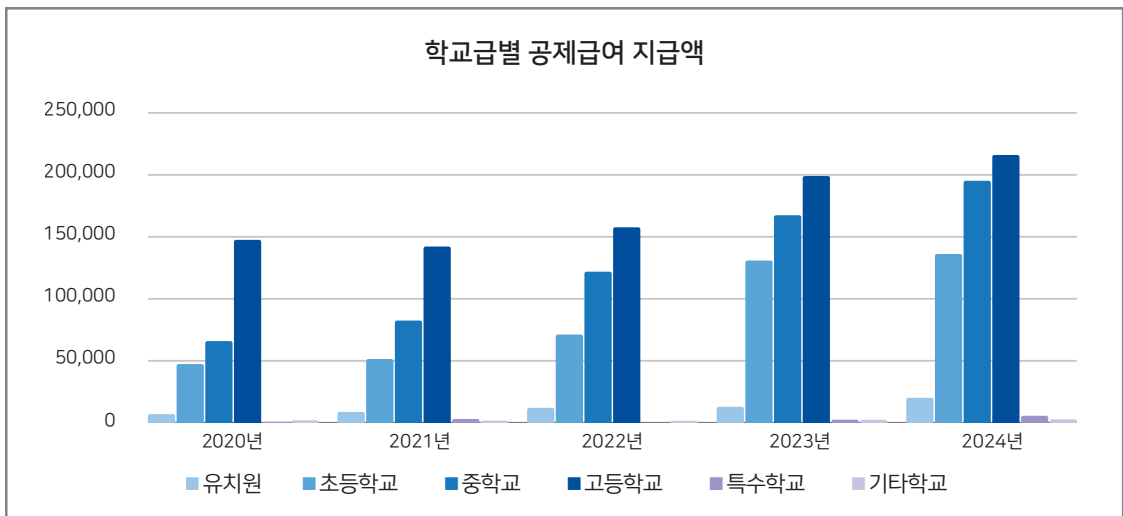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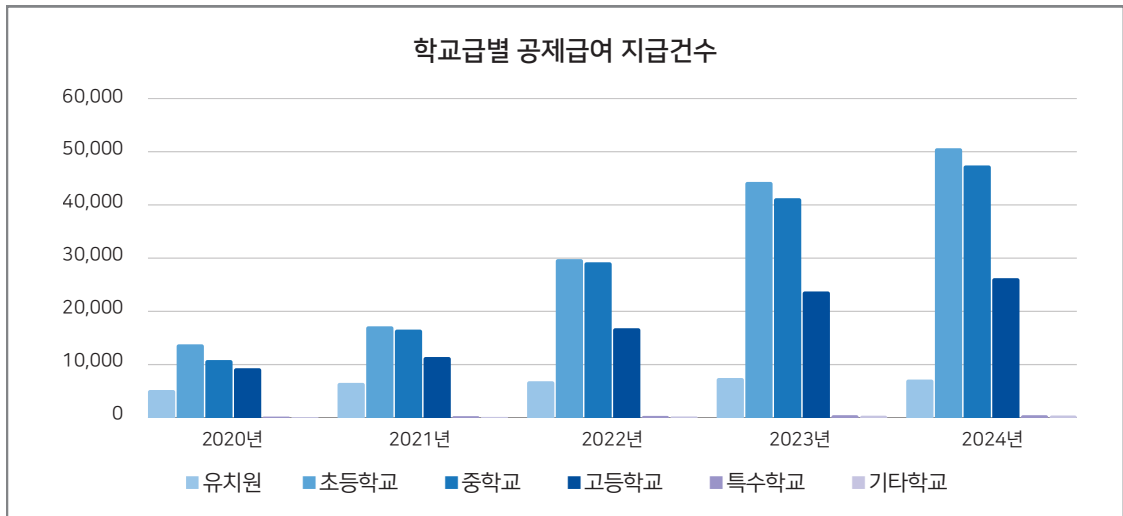


◆ 학교급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20~'24)

(단위 : 건,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유치원	5,224	698,410	6,561	878,779	6,870	1,207,180	7,477	1,291,958	7,186	2,018,805
초등학교	13,805	4,738,452	17,190	5,146,092	29,812	7,120,178	44,320	13,088,599	50,650	13,616,276
중학교	10,850	6,591,795	16,573	8,246,310	29,220	12,188,879	41,260	16,742,574	47,415	19,521,045
고등학교	9,314	14,756,883	11,421	14,218,492	16,828	15,768,822	23,739	19,903,749	26,234	21,600,955
특수학교	229	83,324	312	310,983	358	143,720	492	254,609	487	569,193
기타학교	145	208,781	169	174,106	254	166,353	398	245,329	433	274,621
계	39,567	27,077,645	52,226	28,974,763	83,342	36,595,132	117,686	51,526,818	132,405	57,600,896

※ 보상 금액은 반올림 값으로 부분의 합계가 전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학교안전 증대사고 사례집

제 2 장

학교안전사고 사례

학교안전 중대사고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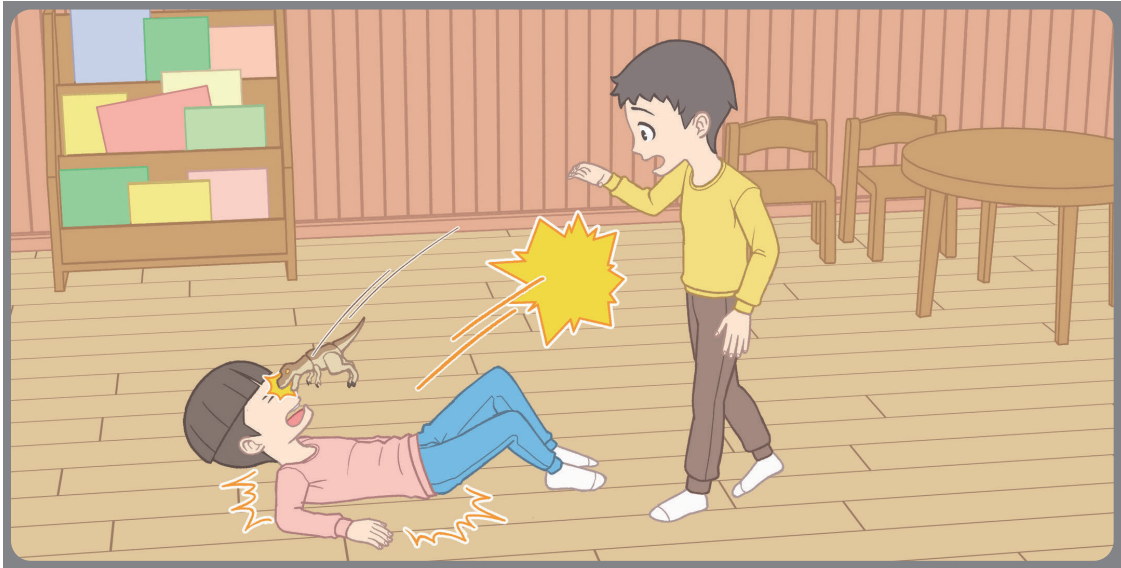
유치원
·
초등학교

1

교실에서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지며 안구 손상

▪ 유치원

▪ 부딪힘



사고 경위

- 교실에서 뛰다가 서 있던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서 있던 학생이 들고 있던 공룡 장난감의 머리 부분에 눈이 부딪혀 2차 부상을 입은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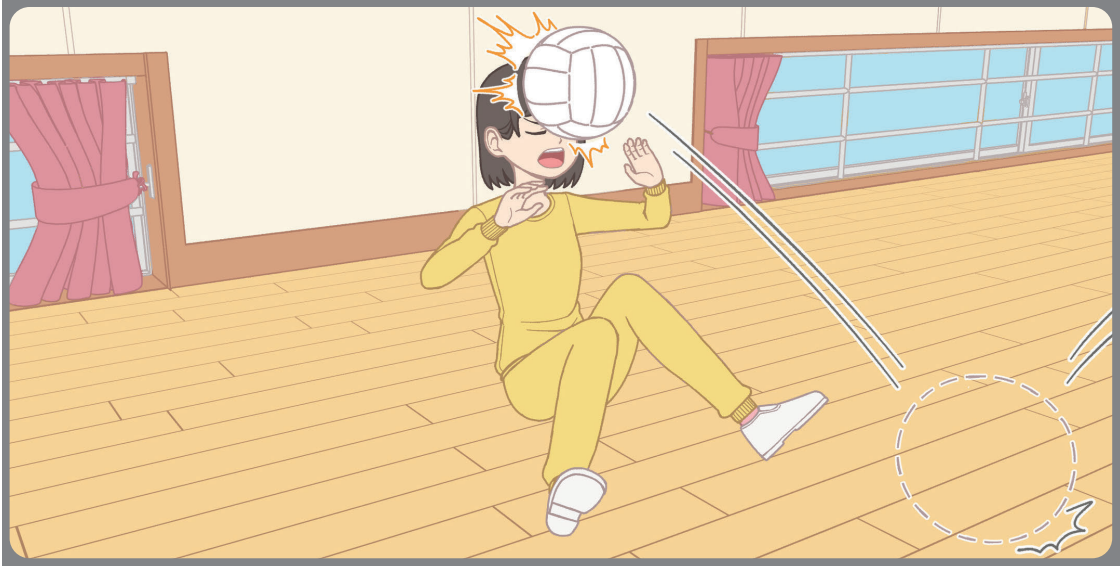
- 교실에서는 뛰지 않고 걸어서 이동하도록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 유아 놀잇감을 선택할 때 모서리나 끝이 둥글고 부드러운 놀잇감을 제공한다.
- 충돌 위험이 있는 복도·교실에서는 추격놀이를 금지한다.
- 눈을 부딪힌 뒤 시력 저하·통증이 있으면 즉시 안과 진료를 받는다.

2

피구 경기 관람 중 바닥에 튕 공에 눈 부상

▪ 초등학교 6학년

▪ 부딪힘



사고 경위

- 체육시간에 경기장 밖에 앉아서 피구 경기를 관람하던 중 다른 학생이 던져 바닥에 튕 공에 눈을 맞아 시신경 손상이 생긴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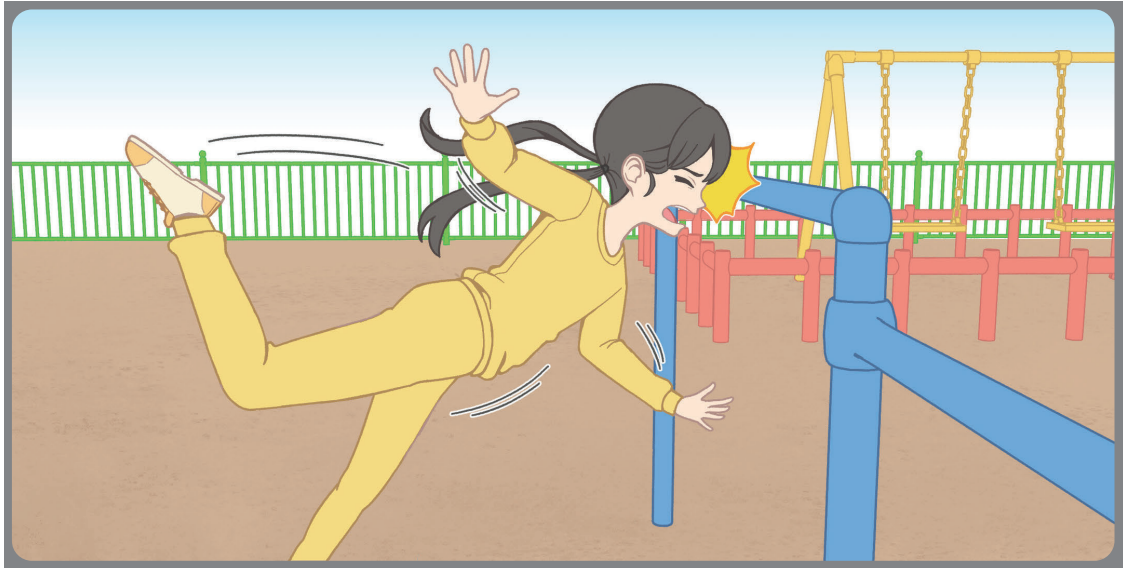
- 관람할 때에는 경기 구역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관람한다.
- 교사는 경기 전 공의 사용 범위와 안전선을 안내한다.
- 구기 경기 관람 중에는 공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공을 피하거나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3

운동장에서 뛰어가다가 넘어지며 철봉에 이마를 부딪쳐 부상

▪ 초등학교 1학년

▪ 부딪힘



사고 경위

- 쉬는 시간에 운동장의 놀이기구가 있는 그네 쪽으로 뛰어가던 중, 그네 근처에 있는 철봉 앞에서 넘어지며 철봉에 이마를 부딪쳐 크게 찢어진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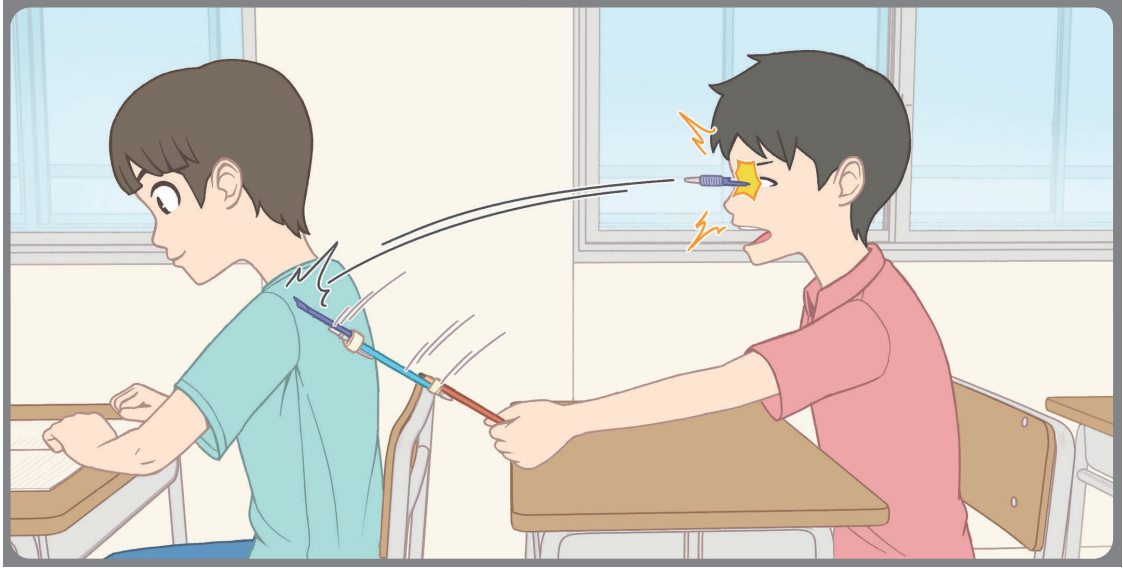
- 그네·철봉 등 놀이기구 주변에서는 충돌 위험이 있으니 뛰지 않고 천천히 걷는다.
- 철봉 하단이나 기둥 등 충돌 위험이 높은 위치에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여 주의를 환기한다.

4

볼펜 등이 연결된 막대 파편이 분리되며 날아와 눈 부상

▪ 초등학교 6학년

▪ 부딪힘



사고 경위

- 볼펜, 샤프, 플라스틱 나사 등을 연결해 만든 긴 막대를 다른 학생의 어깨에 휘두르던 중, 어깨에 부딪히면서 날아간 파편에 눈을 맞아 안구가 손상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교실에서는 물건을 던지거나 휘두르는 등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는다.
- 친구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장난을 칠 때는 즉시 중단하도록 말하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피한다.
- 눈을 다치면 절대 비비지 않고 즉시 보건실이나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5

피구를 하다가 상대방이 던진 공에 눈을 맞아 안구 부상

▪ 초등학교 6학년

▪ 부딪힘



사고 경위

- 점심시간에 피구부 활동으로 피구를 하던 중 상대방이 던진 공에 눈을 맞아 안구를 다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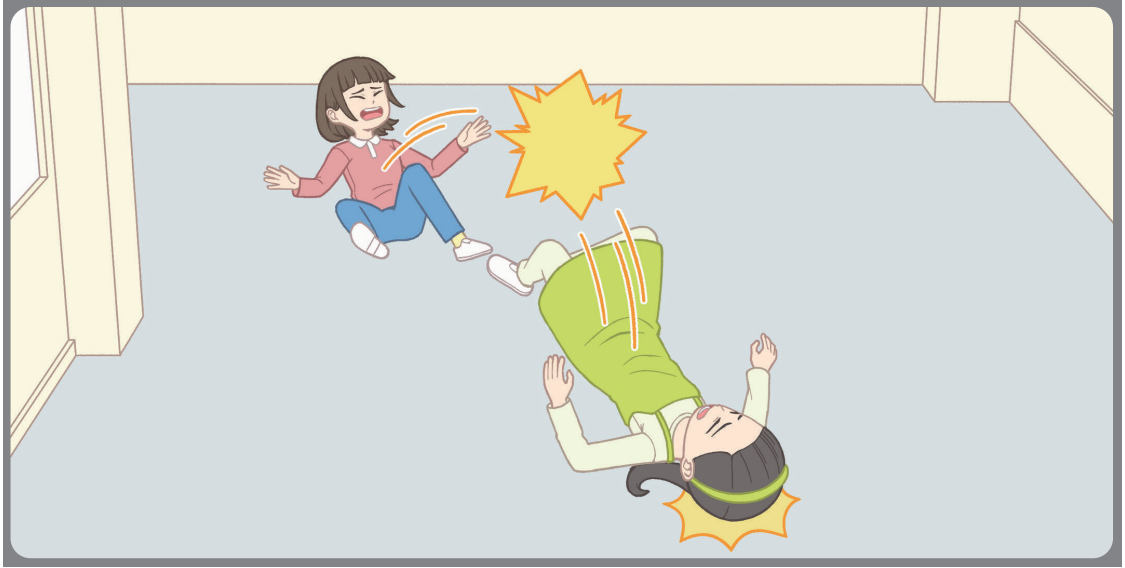
- 피구 수업 전 얼굴·머리를 향해 던지지 않는다는 규칙을 분명히 제시하고 반복 지도한다.
- 안경을 쓰는 학생에게는 스포츠 고글·보호안경 착용을 안내하고, 공의 크기·탄성을 연령에 맞게 조절한다.
- 공이 얼굴 근처로 날아올 때는 팔뚝을 교차하여 얼굴 앞을 가리거나 고개를 즉시 숙여 안구를 보호한다.
- 눈을 세게 맞은 경우 시력 변화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보건실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6

복도 모퉁이에서 마주오던 친구와 부딪쳐 머리 부상

▪ 초등학교 1학년

▪ 부딪힘



사고 경위

- 쉬는시간에 교실로 가던 중 복도 모퉁이에서 반대편에서 오던 학생과 부딪쳐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부상을 입은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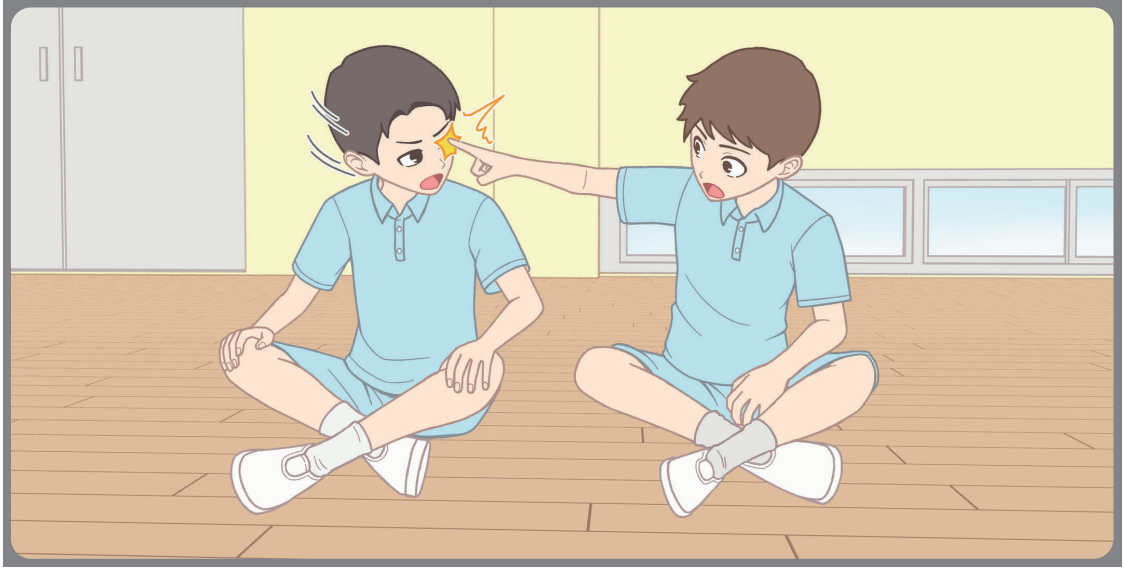
- 복도 모퉁이 등 사각지대에서는 우측통행 및 서행을 생활화하고, 반대편 보행자를 확인 후 이동한다.
- 복도나 계단에서는 뛰지 않고 천천히 걷는다.

7

얼굴에 댄 손가락에 눈을 찔려 부상

▪ 초등학교 6학년

▪ 급힘·베임·절단·찔림



사고 경위

- 체육 시간에 강당에서 출석 확인 및 안전교육을 진행하던 중, 우측에 앉아 있던 친구가 장난으로 학생의 관자놀이 부근에 손가락을 대는 순간 학생이 고개를 돌리면서 손가락이 눈을 찔리게 되어 상처를 입은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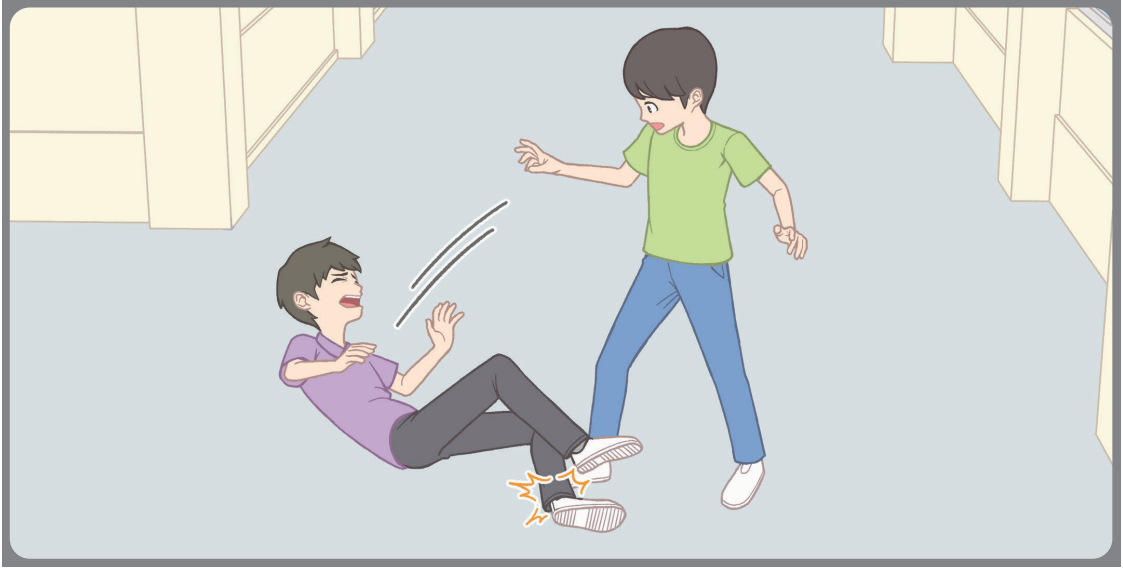
- 수업 중 장난을 치지 않도록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강당·체육관에서 줄을 맞춰 앉을 때는 손·발을 뺀거나 친구와 장난을 치지 않는다.
- 눈을 찔렸을 때는 비비지 말고 즉시 보건실로 이동해 안과 진료를 안내한다.

8

복도에서 놀이를 하던 중 넘어져 발목이 바닥에 부딪혀 골절

▪ 초등학교 6학년

▪ 부딪힘



사고 경위

- 교내 복도 넓은 공간에서 친구들과 다리 잡고 돌리기 놀이를 하려고 눕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의 실수로 넘어져 발목 뼈가 바닥에 부딪히며 골절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타인의 신체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놀이'가 아닌 '위험 행위'임을 인식한다.
- 복도나 계단, 통로 등에서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수 있는 놀이를 하지 않는다.
- 발목 부상 시 즉시 움직임을 제한하고 보건실에서 냉찜질 후 보호자와 병원 진료를 연계한다.

9

친구와 장난하다가 엉켜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

▪ 초등학교 6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쉬는 시간에 친구와 밀고 당기는 장난을 하다가 엉켜 넘어지면서 체중에 눌러 발목이 골절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복도와 교실, 운동장에서는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친구를 넘어뜨리는 위험한 장난은 절대 금지한다.

10

교실에서 친구와 장난을 하다가 발가락 골절

▪ 초등학교 5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수업이 끝난 후 쉬는시간에 교실에서 친구와 서로 업는 장난을 하다가 착지 도중 발바닥이 아닌 발가락으로 착지하면서 발가락이 골절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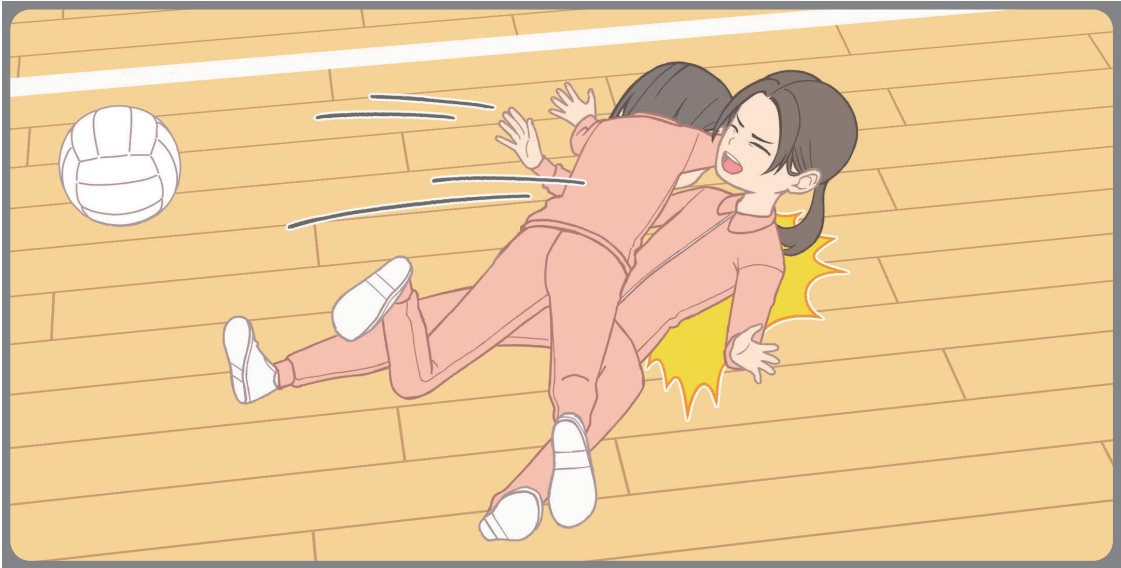
- 교실이나 복도에서 넘어질 위험이 큰 장난은 하지 않는다.
- 친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은 체육 수업 내 교사 지도 하에 안전한 활동(기초 체조, 체력훈련 등)에서만 실시하도록 한다.
- 장난으로 학생을 업거나 떨어뜨린 사례를 소개하며 위험성을 반복 교육한다.

11

피구공을 피하다가 옆의 친구와 엉켜 넘어져 척추 골절

▪ 초등학교 4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체육시간에 피구를 하던 중 날아오는 공을 피하다가 옆에서 같이 피하던 친구와 엉켜 넘어져 척추가 골절된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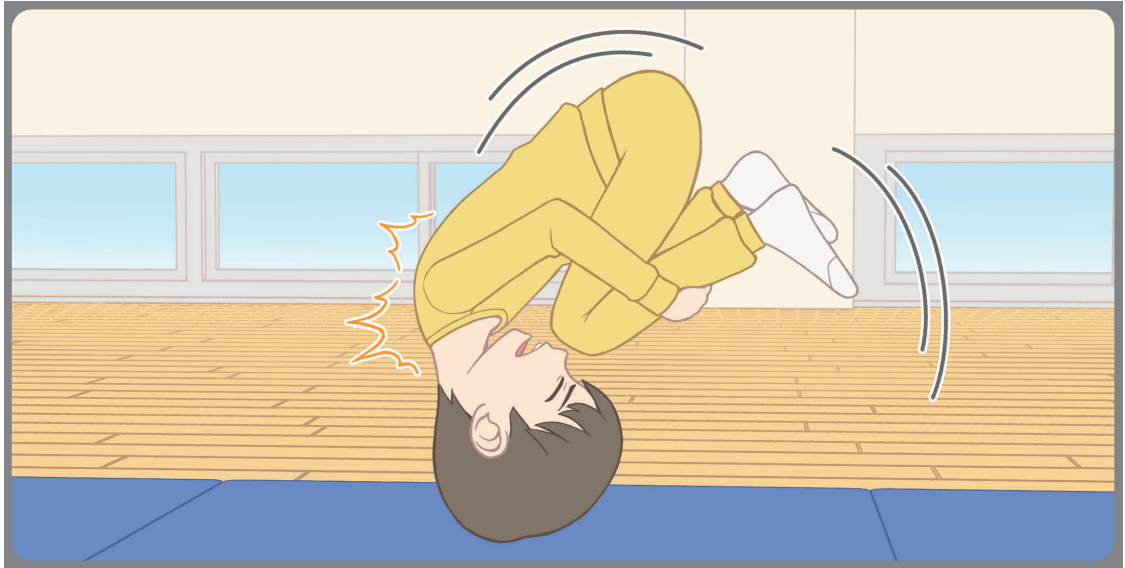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피구는 코트와 안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한 번에 참여하는 인원을 조절한다.
- 공을 피할 때 서로를 밀치거나 붙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측면 이동 시 주변을 확인하도록 지도한다.
- 충돌이 잦은 경우 경기 방식을 바꾸거나 공 종류·투구 속도를 조절해 위험도를 낮춘다.

12

체육시간에 손을 짚지 않고 앞구르기를 하다가 목 부상

▪ 초등학교 5학년 ▪ 스스로 신체에 충격을 가함(염좌·삔임)



사고 경위

- 체육시간에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을 위해 준비운동 후 측정을 기다리던 중, 매트 위에서 손을 짚지 않고 앞구르기를 하다가 목 뒤 경추 부분에 충격을 받아 척추가 압박골절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앞구르기 등 기계체조는 교사 지도 아래 정해진 시간과 방법 하에 매트 등 충분한 기구가 갖춰진 상태에서만 실시한다.
- 체육활동 전 스트레칭과 준비운동을 실시하고, 종목별 안전수칙과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학교안전 증대사고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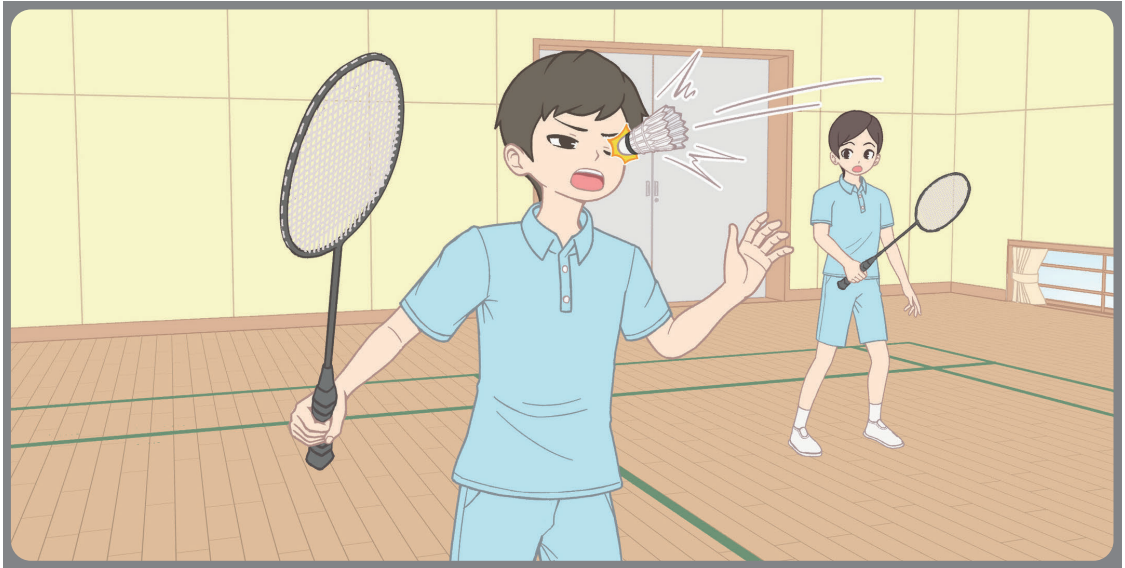
중학교

13

배드민턴 중 스매싱한 셔틀콕에 눈 부상

▪ 중학교 2학년

▪ 부딪힘



사고 경위

- 방과후 배드민턴 수업 중 복식 경기에서 상대 학생의 강한 스매싱에 가까운 위치에서 수비하던 학생이 셔틀콕에 눈을 맞아 부상을 입은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복식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측해보고, 복식경기에서 파트너 간 거리와 역할을 명확히 정해 서로 부딪히거나 너무 가깝게 서지 않는다.
- 셔틀콕과 라켓이 얼굴을 향하지 않도록 각도를 조절하고, 근거리 강한 스매싱은 자제한다.
- 셔틀콕이 스매싱으로 넘어왔을 때, 빠른 속도로 인해 부상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얼굴이나 눈에 맞지 않도록 조심한다.
- 네트 근처에서 수비할 때 라켓 헤드를 얼굴 높이로 들어 올리는 '얼굴 보호 자세'를 취한다.
- 안구 사고 이력이 있거나 시력이 약한 학생, 고강도 경기를 수행하는 학생에게는 '스포츠 고글' 또는 '안전 안경'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

14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져 다리 골절

▪ 중학교 3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점심시간 화장실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으며 허벅지 부위가 골절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생기면 미끄럼 방지 매트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가능한 한 빨리 물기를 제거한다.
-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화장실, 복도, 계단에서 뛰지 않고, 이동할 때 난간이나 손잡이를 잡는다.
- 미끄러져 넘어져 심한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이 있을 경우 단순 타박으로 보지 말고 즉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는다.

15

책상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다가 손가락 골절

▪ 중학교 2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쉬는시간에 교실에서 이동수업을 준비하던 중, 책상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을 짚다가 손가락이 꺾여 골절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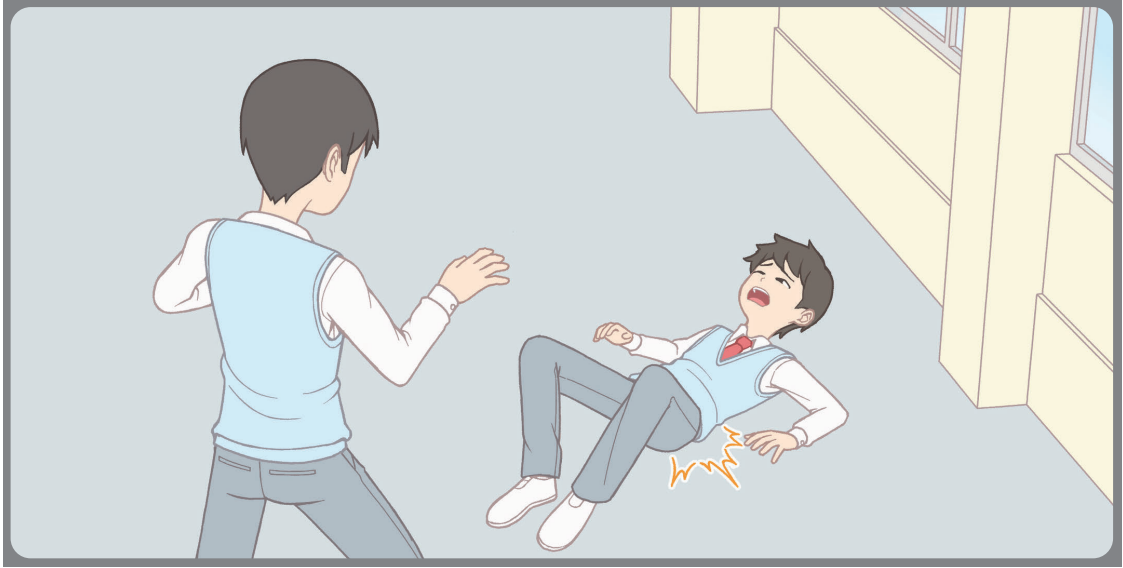
- 교실 통로에는 가방, 의자, 전선 등 걸려 넘어질 물건을 두지 않는다.
- 이동수업 준비 시 서두르지 말고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걷는다.
- 실내에서 뛰거나 장난치며 이동하는 행동을 금지한다.
- 책상과 의자는 정해진 위치에 정돈하여 이동 통로 폭을 확보한다.
- 손을 짚고 넘어져 통증·붓기가 있으면 즉시 냉찜질 후 진료를 받는다.

16

친구와 간지럽히며 장난을 치다가 뒤로 넘어져 허리 골절

▪ 중학교2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점심시간 복도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뒤로 넘어져 등을 부딪혔으나 단순 통증인 줄 알고 파스 처치만 했다가 병원 검진 결과 허리 골절로 확인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복도에서는 장난치거나 밀치는 행동 등 장난을 치지 않는다.
- 친구의 신체를 잡아당기거나 간지럽히는 장난은 교실 안에서도 제한한다.
- 상대방이 신체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장난은 '놀이'가 아닌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 허리·목·등을 세게 부딪힌 경우 즉시 안정을 취하고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에 간다.

17

장마로 바닥이 미끄러운 복도에서 넘어져 다리 골절

▪ 중학교 2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자율활동 시간에 담당 구역을 청소를 하다가 장마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운 복도에서 넘어져 다리가 뒤틀려 허벅지 부위가 골절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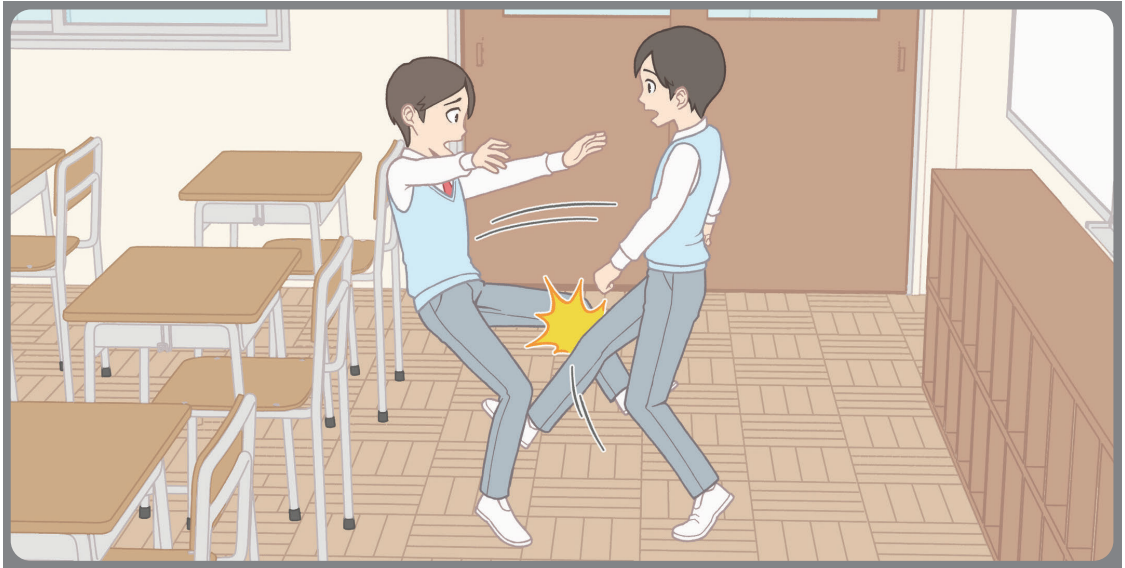
-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복도나 계단이 미끄러우므로 조심한다.
- 바닥이 미끄러울 때는 보폭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인다.
-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구간은 통행을 제한한다.

18

친구가 다리를 걸어 넘어지면서 무릎 골절

▪ 중학교 3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쉬는시간에 교실에서 친구와 다리를 걸며 장난을 치다가, 친구가 다리를 걸어 넘어지면서 무릎이 뒤틀리며 골절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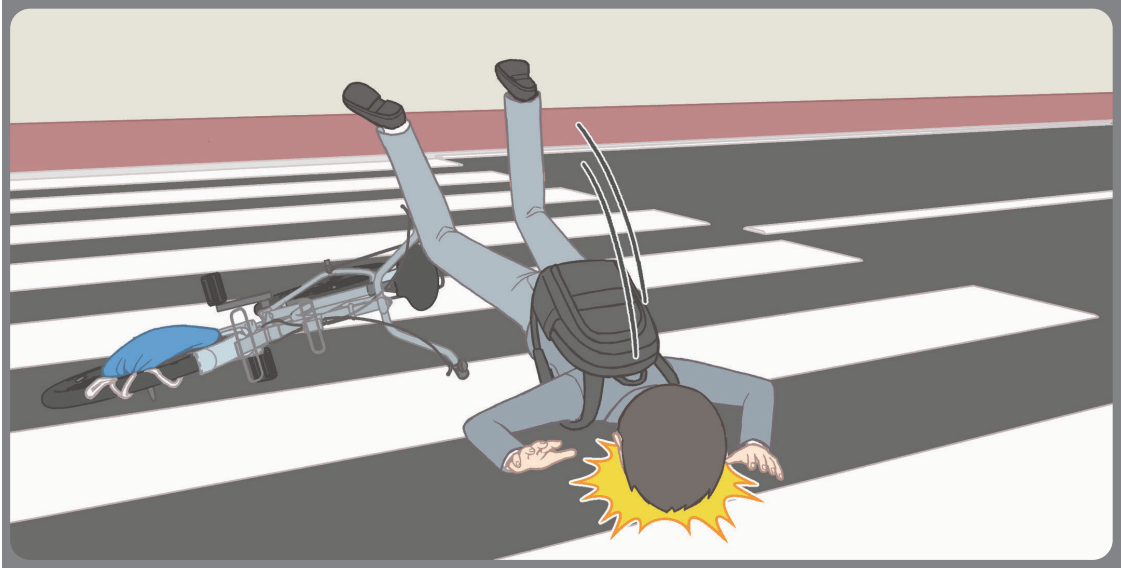
- 장난으로 한 행동이 친구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한다.
- 다리 걸기, 밀치기 등 심한 장난을 하지 않는다.

19

자전거를 타고 하교 중 바퀴에 가방이 걸려 넘어져 얼굴 부상

▪ 중학교 1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하굣길에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바퀴에 체육복 가방이 걸려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얼굴(눈, 치아 등)을 다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자전거 이용 시 핸들이나 바퀴에 끈이나 가방, 옷자락 등이 끼지 않도록 조심하고, 가방은 어깨에 메거나 가방걸이에 단단히 고정한다.
- 자전거 이용 시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고, 필요시 보호대도 함께 착용한다.

20

등굣길에 구조물 위에 올라가다가 넘어져 얼굴 부상

▪ 중학교 1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등굣길에 벤치 모양 철제 구조물 위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구조물에 얼굴이 찍혀 볼이 찢어진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벤치·조형물·난간 등은 올라가지 않으며 노는 공간이 아님을 인지한다.
- 비·눈 등으로 젖은 금속 구조물이 매우 미끄럽다는 사례를 들어 통학로 안전지도를 실시한다.

21

복도에서 혼자 물구나무를 서다가 넘어져 쇄골 골절

▪ 중학교 1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이동 중 복도에서 혼자 물구나무를 서다가 힘이 풀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쇄골로 떨어져 골절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복도나 계단, 통로 등에서는 물구나무서기, 점프, 공중돌기 등 위험한 동작을 하지 않는다.
- 체조와 물구나무 연습은 교사 지도 아래 매트가 깔린 체육관·운동장에서만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 친구가 위험한 동작을 하고 있으면 즉시 멈추도록 말하고 교사에게 알린다.

22

플라스틱 구조물에 올라간 슬리퍼를 가지러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등 부상

▪ 중학교 2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쉬는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친구의 슬리퍼가 구령대 위 플라스틱 구조물에 올라갔고, 슬리퍼를 가지러 플라스틱 판에 올라간 순간 판이 깨지면서 콘크리트 계단에 등으로 떨어지며 부상을 입은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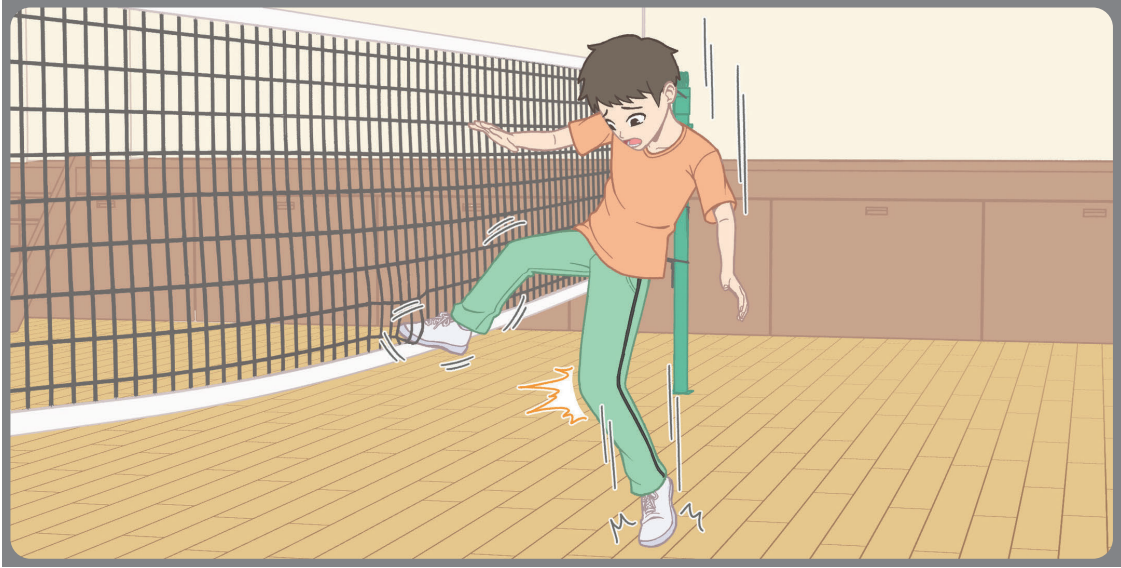
- 담장, 난간, 차양 등에 물건이 걸렸을 때는 직접 매달리거나 올라가지 않으며,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담장이나 난간 근처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받는 장난을 자제한다.
- 플라스틱 천장재 및 조형물 주변에는 파손 주의 표지판을 부착한다.

23

배구 스파이크 착지 과정에서 네트에 걸리며 무릎 부상

▪ 중학교 3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방과후에 체육관에서 배구 경기를 하던 중에, 스파이크를 하는 과정에서 오른발이 네트에 걸려 중심을 잃고 왼발로 착지하면서 무릎이 틀어지며 부상을 입은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배구 네트 하단과 기둥 주변은 학생이 발이 걸리지 않도록 높이·장력을 적절히 조절하고 점검한다.
- 스파이크·블로킹 동작은 충분한 준비운동 후 단계적으로 연습하고, 네트에 몸을 기대거나 잡지 않도록 지도한다.
- 점프 후 착지 시 두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굽혀 충격을 분산하는 방법을 지도한다.
- 공격 시 네트와 너무 밀착하지 않도록 최소 한 팔 간격의 안전거리를 두고 도약한다.

24

체육시간에 제자리 멀리뛰기 중 미끄러져 무릎 부상

▪ 중학교 2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체육시간에 체육관에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연습하던 중 미끄러져 매트 밖으로 넘어지면서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멀리뛰기·점프 활동 시 착지 지점에 충분한 크기의 매트를 깔고, 매트 주변 바닥 상태를 점검한다.
- 체력과 숙련도에 맞게 거리와 난이도를 조절하고, 단계별로 연습한다.
- 바닥이 미끄러운지 사전에 점검하고, 미끄러운 경우 마른 걸레로 닦고 확인한다.
- 체육 활동 시에는 접지력이 우수한 미끄럼 방지 운동화를 착용한다.

25

축구 골대 그물에 걸려 넘어져 고관절 골절

▪ 중학교 1학년 ▪ 스스로 신체에 충격을 가함(염좌·삔임)



사고 경위

- 체육시간에 운동장을 걷어가다가 축구 골대 그물에 걸려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골대와 그물 주변의 줄·말뚝·지지대를 정리·고정해 학생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 사용하지 않는 골대는 접거나 고정해 이동 동선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학생에게 골대와 그물에 매달리거나 그 사이를 통과하지 말 것을 반복 지도한다.
- 그물 하단이나 고정 밧줄에 형광색 테이프나 안전 표식을 부착한다.

26

복도에서 미끄러지면서 손으로 짚은 유리창이 깨져 손목 베임

▪ 중학교 3학년

▪ 긁힘·베임·절단·찢림



사고 경위

- 쉬는시간에 복도에서 뛰어다니다가 물기로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며 복도 창문을 손으로 짚었으나, 유리창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손목을 베인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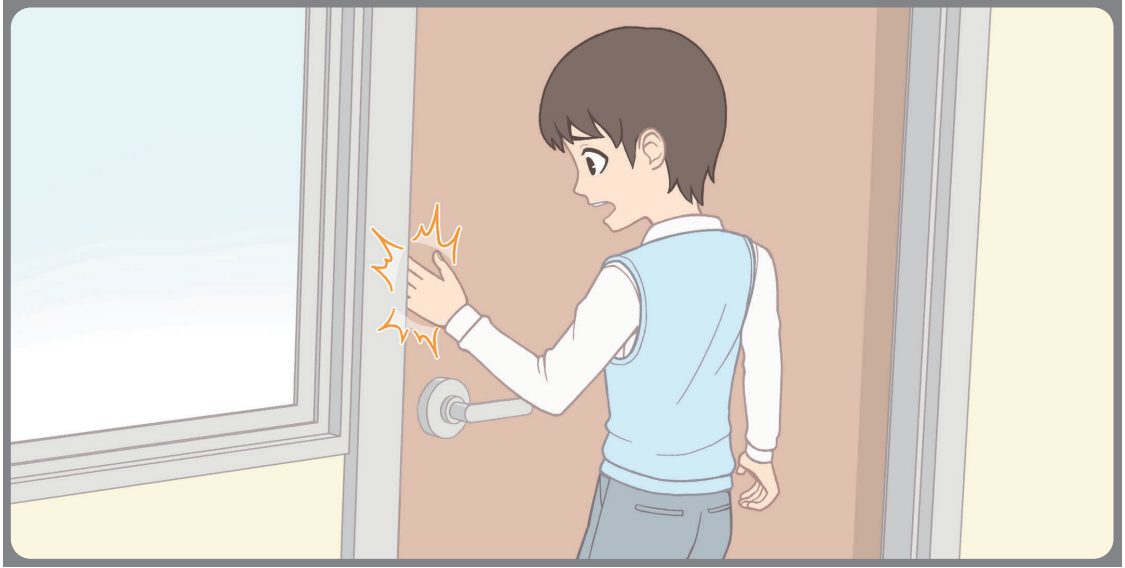
- 복도나 계단에서는 천천히 걸어나가고 뛰지 않는다.
-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복도나 계단이 미끄러우므로 조심하며,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동한다.
- 유리에 베인 경우 출혈 부위를 압박 지혈하며, 유리 조각은 직접 제거하지 않고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는다.
- 복도 창문에 안전 필름을 부착하여 유리가 깨지더라도 파편이 튀지 않도록 한다.

27

강한 바람에 의해 문이 닫히면서 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

▪ 중학교 3학년

▪ 끼임·눌림



사고 경위

- 점심시간 교실에서 나가기 위해 문틀을 손으로 잡고 있던 상황에 문 반대편에 열어둔 창문을 통해 세찬 바람이 불어 문이 강하게 닫히면서 문과 문틀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문틀, 경첩 부근에 손가락을 두지 않으며, 문을 열고 닫을 때 손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 출입문 주변에서 장난치거나 문을 세게 여닫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어클로저를 설치하거나 문고정 장치를 사용한다.
- 끼임 사고 발생 시 출혈을 지혈하고 절단 부위를 깨끗이 보관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28

요리 수업시간에 냄비가 미끄러져 쏟아진 뜨거운 물에 다리 화상

▪ 중학교 3학년

▪ 열, 전기에 의한 손상



사고 경위

- 방과후 요리 수업시간에 당근을 삶은 물을 개수대로 옮겨 행구기 위해 냄비를 올려두려다가, 물기에 냄비가 바닥으로 미끄러지면서 쏟아진 뜨거운 물에 다리 화상을 입은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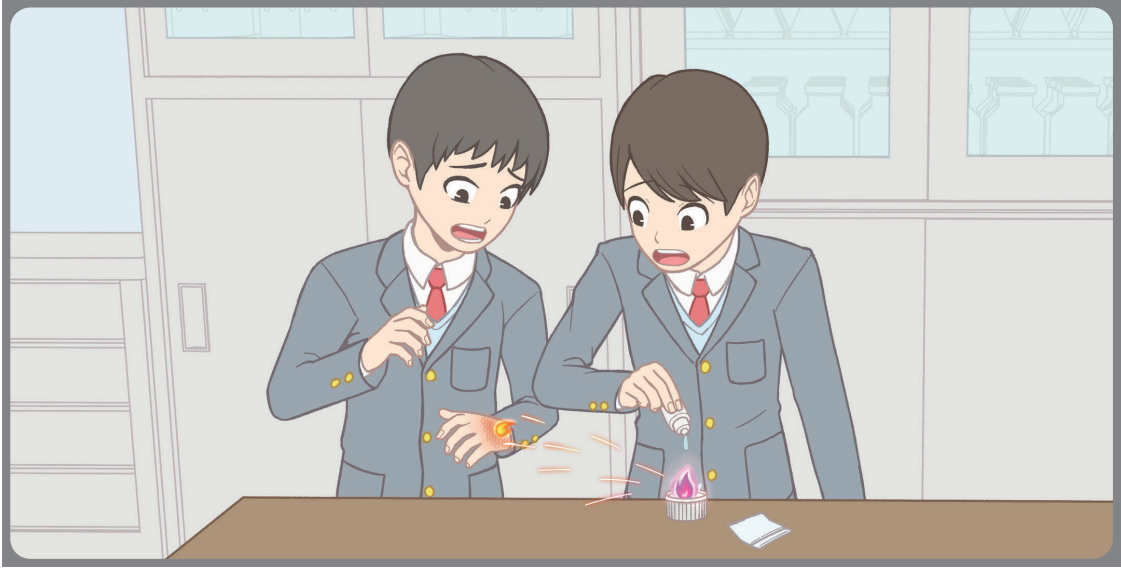
- 뜨거운 냄비를 옮길 때는 이동 전 손잡이의 물기, 바닥의 물기나 기름기를 먼저 제거하고, 두 손으로 손잡이를 단단히 잡는다.
- 냄비는 개수대 안쪽에 안정적으로 내려놓고, 가장자리나 경사진 곳에 걸치지 않는다.
- 조리 실습 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칼 사용법이나 불로 인한 화상 등에 유의한다.

29

과학실에서 불꽃 반응 실험 중 불꽃이 튀어 손 화상

▪ 중학교 2학년

▪ 열, 전기에 의한 손상



사고 경위

- 과학실에서 바나나 가루와 에탄올을 이용한 불꽃 반응 실험을 하던 중 미니 양초 금속 홀더에 에탄올을 보충하다가 불꽃이 튀어 손에 화상을 입은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실험·실습 전 반드시 실습복과 보안경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 에탄올을 보충하기 전 반드시 불꽃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다.
- 화학물질이 피부에 튀거나 화상을 입은 경우 즉시 흐르는 물로 식히고 응급처치를 한다.

30

공을 줍기 위해 담장을 넘다가 허리 부상

▪ 중학교 2학년

▪ 그 밖의 손상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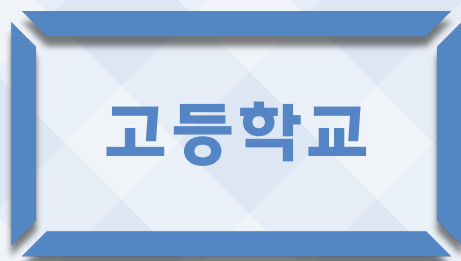
사고 경위

- 운동장에서 배구를 하던 중 공이 담장 밖으로 넘어가서 공을 줍기 위해 담장을 넘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아 골절 및 염좌가 발생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공이 담장 밖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공을 줍기 위해 담장을 넘지 않으며, 교사에게 알린다.
- 허리에 부담이 가는 동작을 피하고, 통증이 있으면 즉시 활동을 중단한다.

학교안전 중대사고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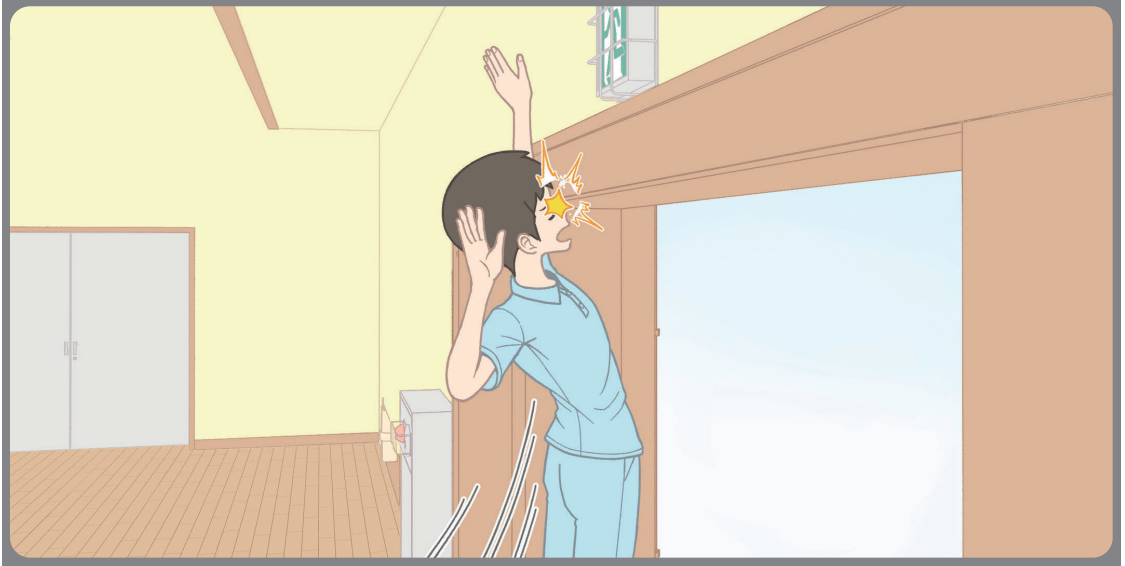
고등학교

31

스파이크 점프를 하며 이동 중 구조물에 눈 부상

▪ 고등학교 2학년

▪ 부딪힘



사고 경위

- 쉬는시간에 체육관에서 배구 연습을 하고 수업 시작 종이 울리자 교실로 돌아가는 중 스파이크 점프를 하며 이동하다가 방화문 구조물에 눈을 다치며 실명에 이른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체육관·강당에서는 이동 중 점프나 스파이크 동작을 하지 않고, 기술 연습은 지정 구역에서만 실시한다.
- 방화문·기둥·벽 모서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조물에는 눈에 잘 띄는 노란색/검은색 안전띠나 형광 반사판, 안전완충재 등을 설치한다.
- 무리하게 점프하며 장난을 치지 않는다.



사고 경위

- 야구부 훈련 중 캐치볼 훈련을 하다가 날아오는 공에 눈을 맞아 눈 주변이 찢어지고 골절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투수와 포수는 투구 방향과 주변 상황을 항상 확인한다.
- 훈련·경기 전 준비운동과 스트레칭, 공 다루기 기본기 교육을 충분히 실시한다.
- 컨디션 난조나 기초 훈련 시에는 부상 위험이 적은 연식구나 소프트볼을 활용한다.
-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른다.

33

허들을 넘다가 무릎이 부딪혀 꺾이며 부상

▪ 고등학교 1학년

▪ 부딪힘



사고 경위

- 체육시간에 체육관에서 2개의 허들을 넘는 도중 첫번째 허들을 통과한 후 두번째 허들을 넘을 때 무릎이 허들에 부딪히면서 꺾여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허들높이를 신체 조건에 맞게 조정하거나 신체 사이즈에 맞는 허들을 선택한다.
- 접촉 시 쉽게 쓰러지거나 부드러운 소재로 제작된 플라스틱/소프트 안전 허들을 사용한다.
- 허들을 넘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 착지 구간 바닥 상태(모래·매트)를 점검해 미끄럼을 방지한다.
- 학생은 자신의 보폭이나 점프력에 비해 간격이 멀거나 높다고 느껴지면 조정을 요청하고, 교사는 위험 자세를 즉시 교정하고 통증이 있는 학생은 참여를 제한한다.

34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다가 담장에 충돌하며 머리 등 부상

▪ 고등학교 2학년

▪ 부딪힘



사고 경위

- 하교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경사가 심한 언덕을 내려오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커브에서 담장에 충돌 후 바닥에 2차 충돌하며 머리 등에 부상을 입은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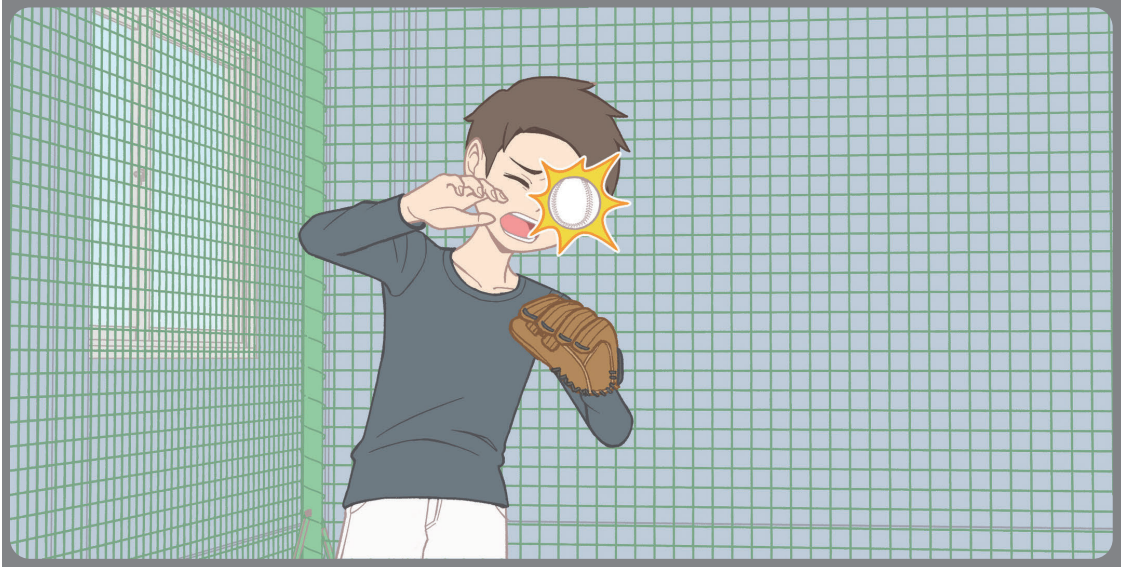
- 경사가 큰 내리막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이동한다.
- 자전거 이용 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 브레이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과속을 하지 않는다.
- 도로 커브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 차량과 보행자를 확인한다.

35

야구 연습 중 배트의 끝부분을 맞고 날아온 공에 눈 부상

▪ 고등학교 2학년

▪ 부딪힘



사고 경위

- 야구부 실내연습장에서 토스 배팅 연습 중 토스했던 공이 배트의 끝부분을 맞고 날라와서 광대뼈 인근과 눈에 맞아 시신경 손상이 생긴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실내 타격 연습 시 타자와 투수 모두 보호헬멧과 안면 보호대를 착용한다.
- 타격 방향 정면에 투수·토스하는 학생이 서지 않도록 각도를 조정한다.
- 실내에서는 구속을 낮춰 연습용 공(연질구)을 사용한다.
- 눈 주변을 강하게 맞은 경우 시야 변화 유무와 관계없이 안과 전문의 진료를 받는다.

36

풋살 경기 중 얼굴로 날아오는 공을 막다가 손가락 골절

▪ 고등학교 2학년

▪ 부딪힘



사고 경위

- 체육시간에 팀을 나누어 풋살 경기를 하던 중 상대방이 찬 공이 얼굴로 날아와서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손으로 공을 막으려다가 새끼손가락이 골절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풋살 경기 전 손가락·팔 부상 예방을 위해 장신구를 제거하고 기본 방어 동작을 지도한다.
- 상대 얼굴을 향한 강한 슈팅은 하지 않으며, 공은 허리 아래 방향으로 차도록 지도한다.
- 공이 얼굴로 날아올 때는 얼굴이나 몸을 돌려 맞지 않도록 하거나, 헤딩·가슴 트래핑 등의 기술을 활용한다.

37

태권도 훈련 중 상대방 발차기에 무릎을 부딪쳐 부상

▪ 고등학교 3학년

▪ 부딪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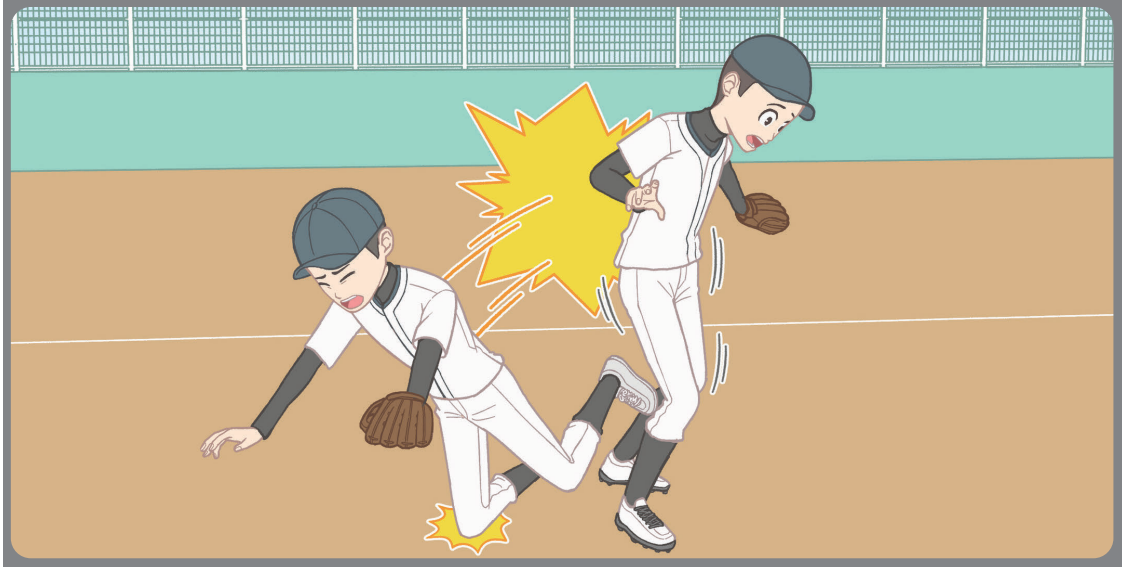


사고 경위

- 태권도부 훈련으로 겨루기를 하던 중 상대편 학생의 발차기에 무릎을 부딪치며 부상을 입은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태권도 등 겨루기 훈련 전에 주요 보호대(머리·무릎·정강이 등) 사전에 착용하고 착용 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 경기 중 보호구가 느슨해지면 중단 요청 후 재고정한다.
- 학생 수준에 따라 접촉 강도와 기술 수준을 제한하고, 안전 위주의 스파링 규칙을 적용한다.
- 상대 선수를 향한 무리한 돌진과 관자놀이·무릎 등 급소 공격은 금지한다.



사고 경위

- 야구부 실전 경기 대비를 위해 자체 경기 중에 외야 뜬공 처리 과정에서 다른 선수와 충돌하며 무릎 부상을 입은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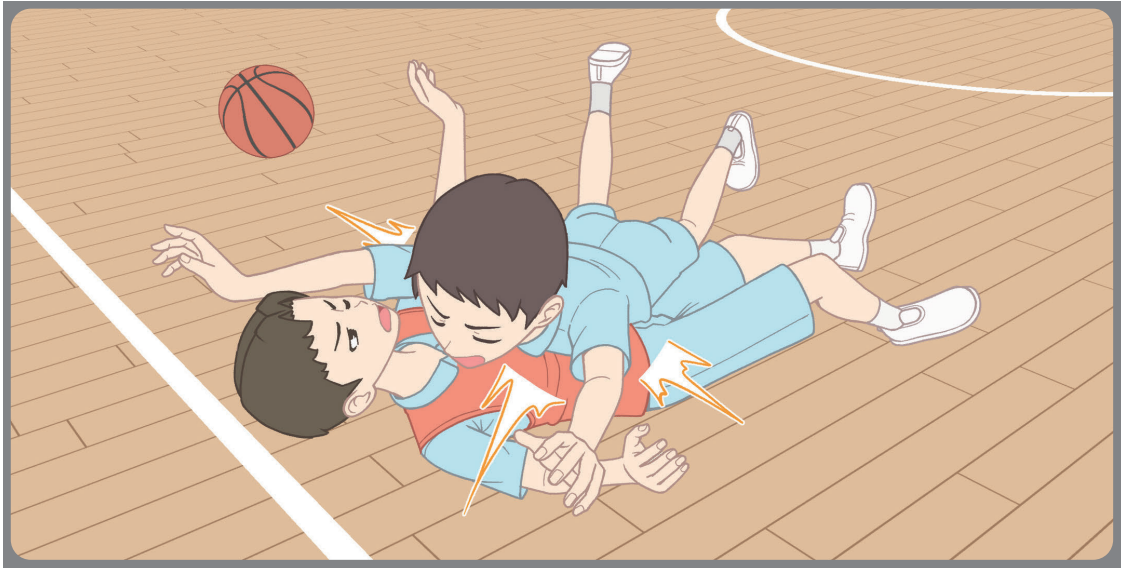
- 야구 수비 시 외야수 간 콜(play call) 시스템을 철저히 훈련해 충돌을 예방한다.
- 경기 전 수비 위치·우선권(중견수 우선 등)을 명확히 정해 반복 연습한다.
- 부득이하게 충돌이 예상될 경우, 몸을 낮게 굴리거나 슬라이딩한다.

39

농구 경기 중 점프했던 상대방 학생에게 깔리며 요추 골절

▪ 고등학교 1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체육관에서 농구 경기를 하던 중 백보드에 맞고 튕겨 나온 공을 잡아 슛을 시도하던 상황에서 슛을 막기 위해 점프한 상대방 학생이 정면으로 떨어지면서 깔려 요추 등 전반이 골절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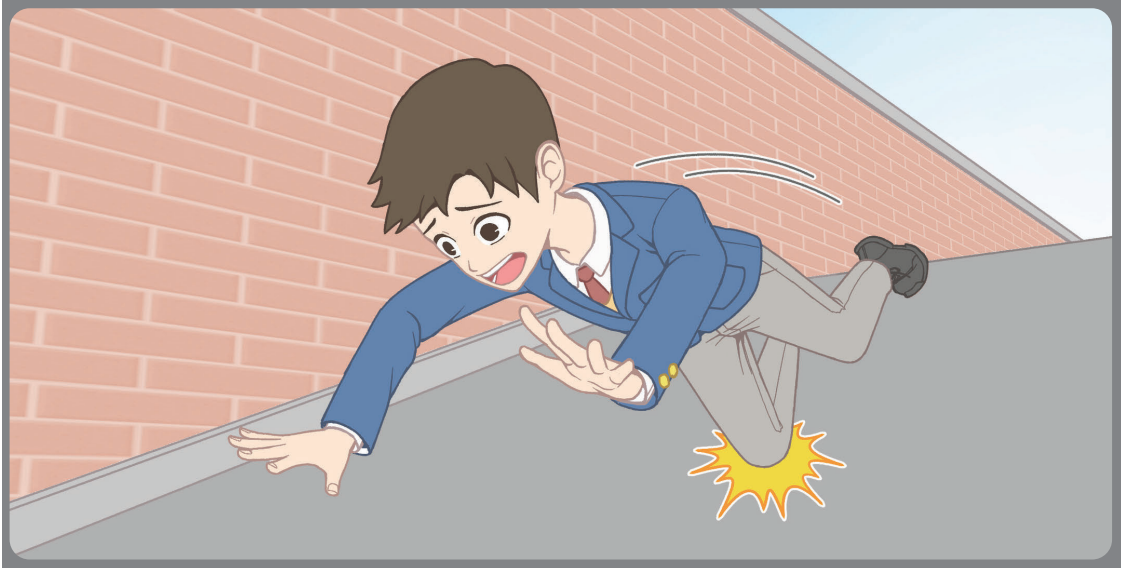
- 농구 수업에서는 프로 경기식 과격한 블로킹·차징을 금지하고, 접촉 강도를 학생 수준에 맞게 제한한다.
- 점프 전후 주변을 살피고, 착지 구역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 혼잡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점프하지 않는다.
- 과열된 몸싸움이나 위험한 착지가 예상될 경우, 교사가 즉시 경기를 중단시키고 안전 주의를 주어 부상을 방지한다.

40

등굣길에 무릎이 꺾이며 시멘트 바닥에 넘어져 무릎 부상

▪ 고등학교 2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등굣길에 학교 인근 언덕길을 내려오던 중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무릎이 꺾이면서 시멘트 바닥에 넘어져서 무릎과 주변 인대에 부상을 입은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경사진 곳에서는 뛰지 말고 난간을 잡고 내려간다.
- 비나 눈 등 미끄러운 날에는 보행 시 더욱 유의하며, 통학로 위험 구간을 사전에 안내받고 우회한다.
- 넘어질 위험이 있으면 주저앉거나 속도를 줄인다.

41

축구를 하다가 운동장 바닥에 걸려 넘어져 무릎 부상

▪ 고등학교 3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중 고르지 못한 운동장 바닥에 걸려 넘어지며 무릎 십자인대 부상을 입은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축구 활동 전 운동장 상태(돌, 웅덩이, 경사 등)를 먼저 점검하고, 바닥이 평평하고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 잔디 훼손, 요철 등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교사에게 알린다.
- 발목이나 무릎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동화 끈이 풀리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계단에서 계단 높이보다 발을 더 높게 올리다 접질리며 무릎 부상

▪ 고등학교 2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교실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던 중 계단 높이보다 발을 더 높게 올리는 순간 다리가 접질리며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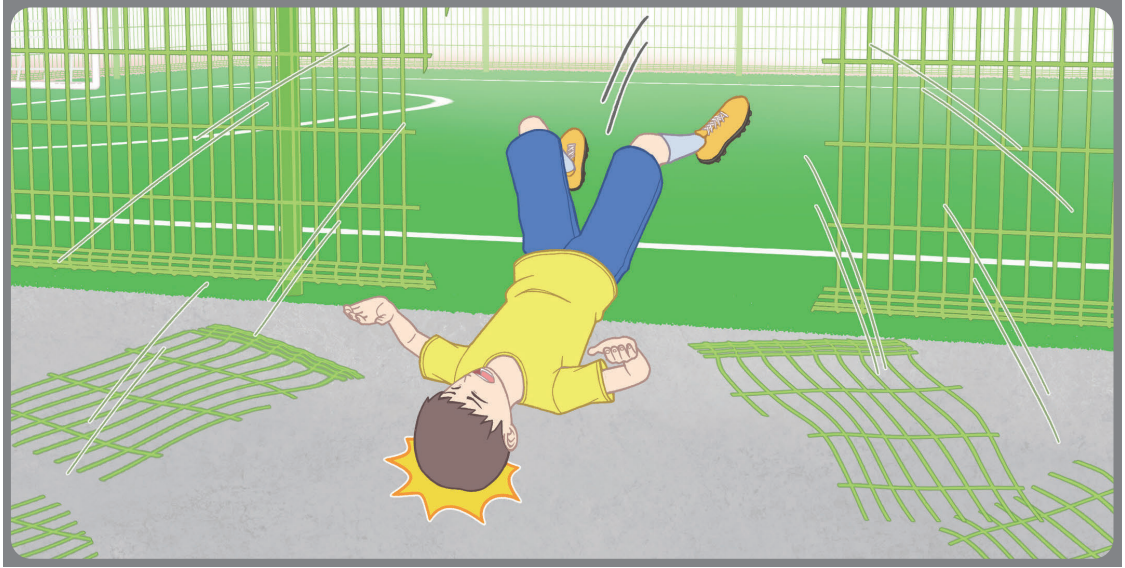
- 계단에서는 천천히 걸어다니고 뛰지 않으며, 손잡이를 잡고 한 칸씩 오르내린다.
- 계단을 한꺼번에 두 칸씩 오르거나 계단 난간을 타고 내려오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 여러 사람이 계단을 이용할 때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이동하며, 계단 코너 등 시야가 가려지는 구간은 속도를 줄인다.
-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복도나 계단이 미끄러우므로 조심한다.

43

공을 잡으려다가 펜스가 파손되며 튕겨나가 머리 부상

▪ 고등학교 2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체육대회 예선 경기 중 패스된 축구공을 잡기 위해 달려가던 중, 펜스의 반동을 이용해 되돌아 나오려는 순간 펜스가 파손되면서 밖으로 튕겨 나가 머리를 다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축구 등 경기를 할 때에는 경기장 경계선 안에서만 움직이고, 펜스를 딛거나 기대는 행동, 반동을 이용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 공이 펜스 근처로 나갈 때는 무리하게 따라가지 않으며 라인 근처에서 속도를 줄인다.
- 체육활동 전에 주변 시설이나 환경을 점검하여 사전에 다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파손된 시설물은 만지지 않고 교사에게 알린다.



사고 경위

- 귀가하기 위해 계단을 급하게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뎈 구르면서 요추, 흉추 등이 골절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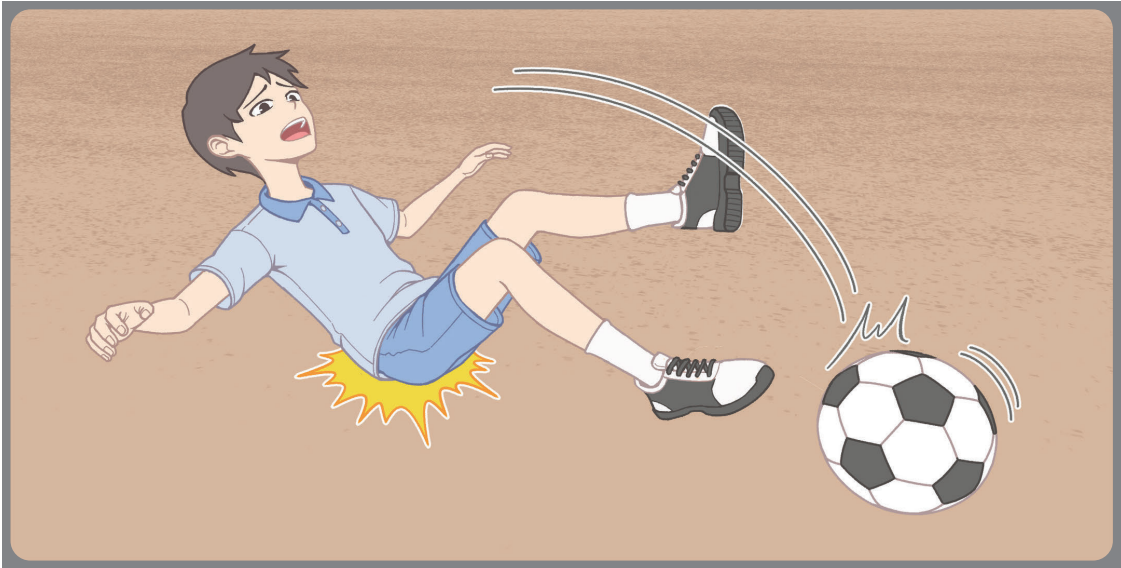
- 계단에서는 조심히 걸어다니고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 등하교 시간과 같은 통행량이 많은 시간에는 한 줄로 천천히 내려간다.
- 허리·목·등을 세게 부딪힌 경우 즉시 안정을 취하고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에 간다.

45

축구를 하다가 공을 밟아 넘어지며 허리 골절

▪ 고등학교 1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굴러가는 공을 잡기 위해 뛰어가던 중 공을 밟아 넘어지며 허리 골절을 당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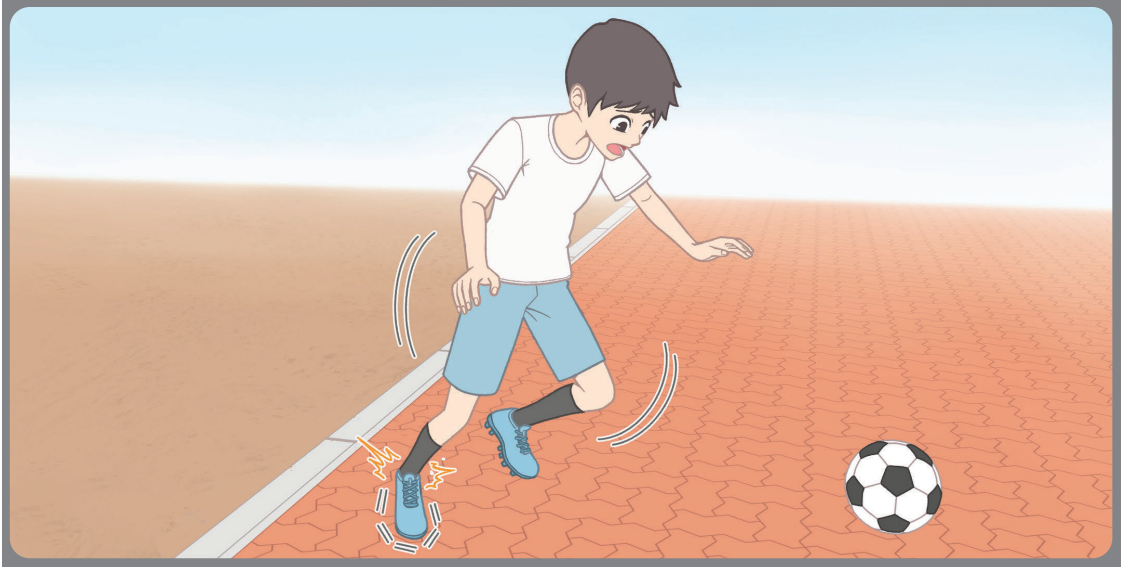
- 운동 전 충분히 준비운동과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 무리하게 굴러가는 공을 잡으려고 하지 않으며, 굴러가는 공을 멈추기 위해 공 위를 발로 누르려 하지 않는다.
- 허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피하고, 통증이 있으면 즉시 활동을 멈춘다.

46

축구를 하다가 트랙 주변 보도블럭에 축구화가 끼어 넘어져 발목 골절

▪ 고등학교 1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던 중 운동장 주변 보도블럭 구멍에 축구화 바닥의 스테드가 끼어 넘어지며 발목이 골절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운동장 주변 보도블럭, 배수구 등 위험구역 여부를 확인하며 움직인다.
- 구멍이 있는 곳은 피하고 주변을 살피며 걷는다.
- 운동장 주변에 위험 구역이 있는 경우 라인 테이프 등으로 표시하고 접근을 제한한다.

47

축구를 하다가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무릎 부상

▪ 고등학교 2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던 중 여러 학생들이 엉켜 공을 빼앗는 몸싸움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밀치기, 태클, 뒤에서 들어가는 몸싸움 등 위험 행위는 하지 않는다.
- 부딪힘이 잦은 상황에서는 인원수를 줄이거나 경기장을 넓힌다.
- 교사는 과도한 경쟁·승부욕을 완화하는 지도를 한다.
- 무릎 통증·불안정감이 있으면 즉시 활동을 중지하고 진료를 받도록 한다.

48

하곳길에 뛰어가다가 발을 헛디뎈 넘어져 다리 골절

▪ 고등학교 1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하곳길에 교문 앞 신호등을 건너기 위해 뛰어가다가 넘어져 허벅지 부위가 골절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횡단보도 및 교문 앞에서는 절대 뛰지 않고 보행한다.
- 신호가 깜빡이거나 바뀌는 상황에서는 무리해서 건너지 않으며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 등하곳길 안전교육을 통해 보행자 안전수칙을 정기적으로 지도한다.
- 사고가 잦은 교문 앞 횡단보도에 노란 발자국 스티커를 부착한다.

49

등교 중 발목이 꺾이며 보도블럭에서 떨어져 발목 골절

▪ 고등학교 2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등교 중에 버스정류장에서 보도블럭을 못보고 뛰어가다가 발목이 꺾이면서 보도블럭에서 떨어져 발목이 골절되고 인대가 파열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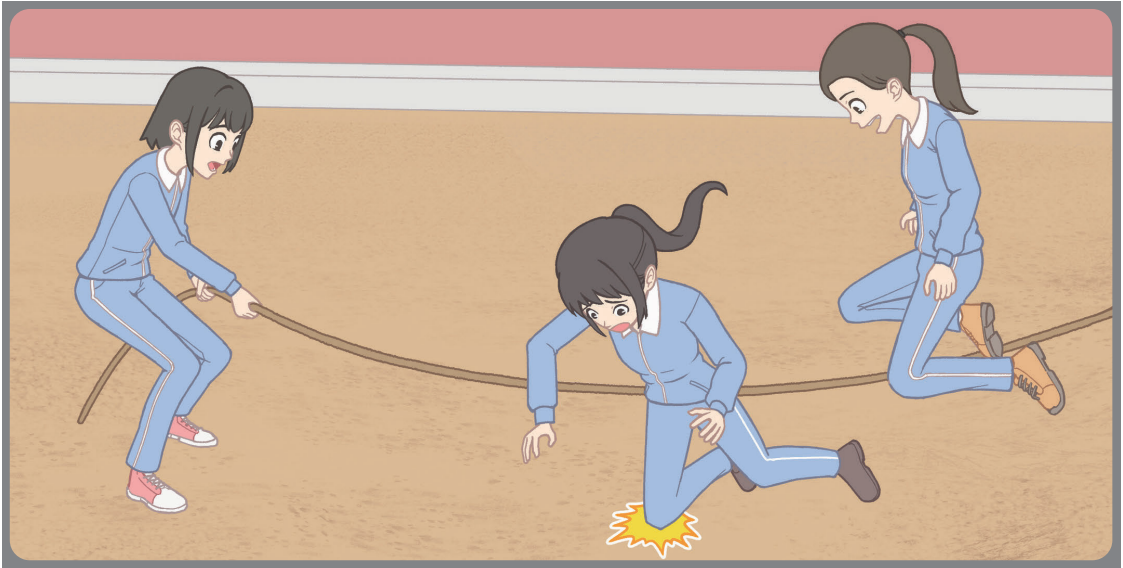
- 버스 도착 전후에 뛰지 말고 여유 시간을 두고 등교한다.
- 등하굣길에는 천천히 걷고 뛰지 않는다.
- 버스정류장 내·외부 보도블럭 등 주변을 주의깊게 살핀다.
- 발목 보호를 위해 운동화 끈이 헐겁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한다.

50

단체줄넘기 밖으로 나가던 중 미끄러져 무릎 부상

▪ 고등학교 1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단체줄넘기를 하면서 안에서 뛰다가 줄넘기 밖으로 나가던 중에 미끄러져 무릎을 부딪치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단체줄넘기 전 참여 인원과 줄 속도를 학생 수준에 맞게 조절하고 과도한 기록 경쟁을 피한다.
- 줄 출입 구역 주변 바닥의 물기와 장애물을 제거한 뒤 활동을 시작한다.
- 줄 밖으로 나올 때는 줄을 잠시 멈추고 한 명씩 천천히 이동하게 한다.
- 체육 활동 시에는 접지력이 우수한 미끄럼 방지 운동화를 최대한 착용한다.

51

치어리딩 연습 중 텀블링 착지 과정에서 무릎 부상

▪ 고등학교 3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점심시간에 치어리딩 동아리 활동 연습으로 텀블링을 하던 중 착지 과정에서 무릎에 심한 충격이 가해져 무릎 인대가 손상된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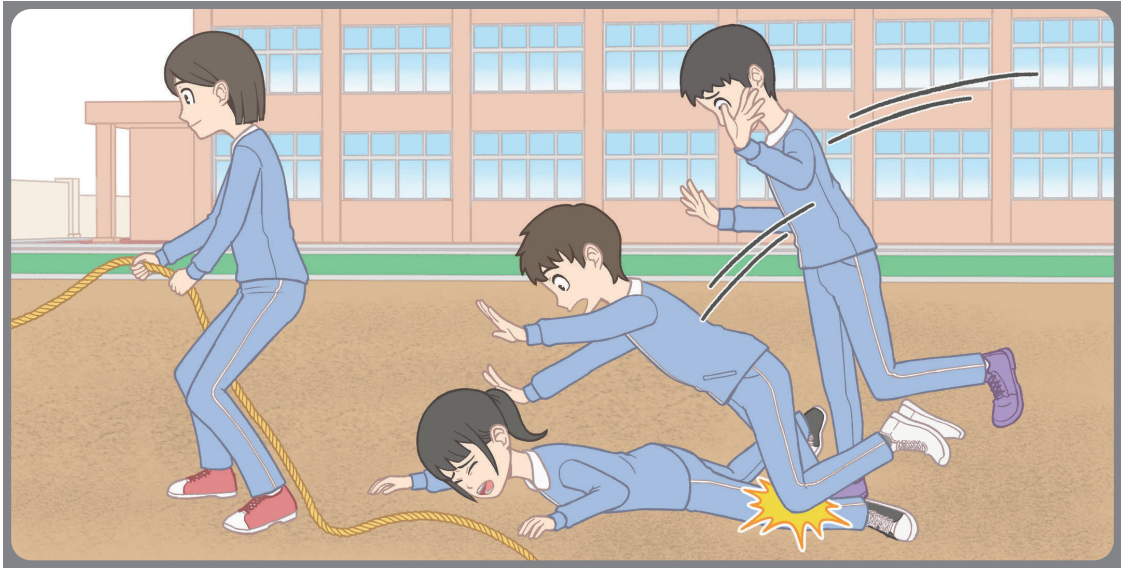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치어리딩 활동을 할 때에는 발목 및 무릎 보호대를 착용한다.
- 텀블링과 점프 동작은 반드시 매트 위에서 실시하고 착지 지점 주변 공간을 확보한다.
- 지도교사가 준비운동과 기초 동작을 충분히 지도한 뒤 난이도를 단계적으로 높인다.
- 난이도 높은 동작에는 보조자를 배치해 넘어짐과 뒤틀림을 잡아준다.

줄다리기 중 뒤에서 달려오던 학생이 충돌하면서 무릎 부상

▪ 고등학교 2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체육대회에서 변형 줄다리기 규칙에 따라 남학생들이 뛰어와 줄을 잡는 과정에서 줄을 잡고 있던 여학생과 충돌해 넘어지고, 뒤따라 달려오던 남학생들이 연이어 넘어지며 여학생의 무릎이 뒤틀려 부상을 입은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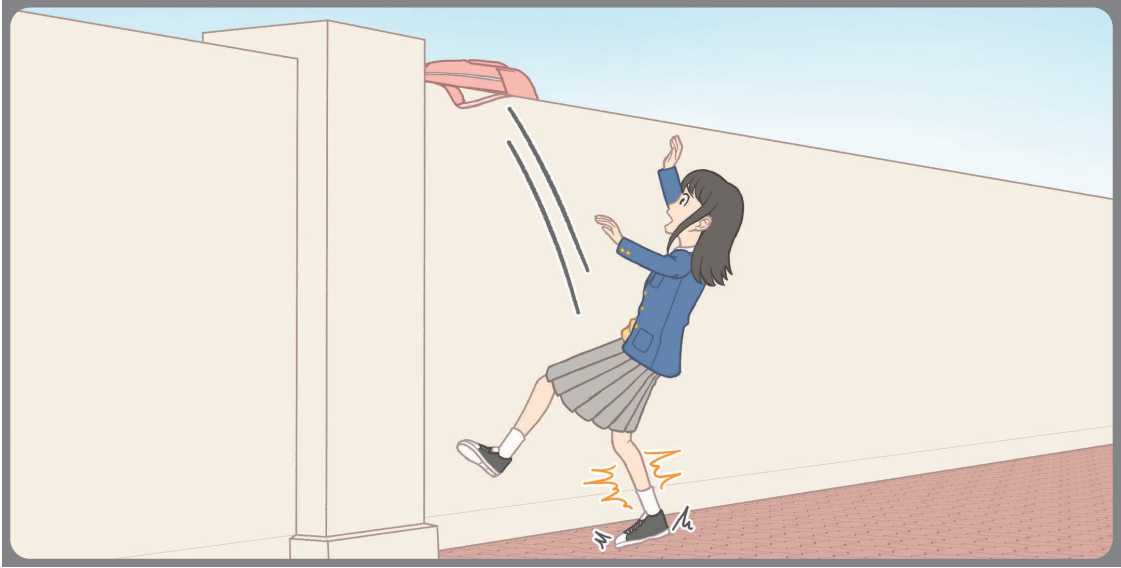
- 경기 전 줄 주변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끄럼·충돌 위험에 대한 안전 수칙을 충분히 설명한다.
- 집단 경쟁 시 주변 충돌 위험 구역을 확보한다.
-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나 비명이 들리면 즉시 동작을 멈추고 주변에 "멈춰!"라고 외친다.

53

학교 담장에 걸린 소지품을 빼내려다가 담장에서 떨어져 다리 골절

▪ 고등학교 2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등굣길에 학교 담장에 소지품이 걸려 직접 빼내려고 하다가 담장에서 떨어져 다리가 골절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담장, 난간, 차양 등에 물건이 걸렸을 때는 직접 매달리거나 올라가지 않으며,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담장이나 난간 근처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받는 장난을 자제한다.
- 학교는 통학로 주변 위험 구조물을 점검하고 필요 시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사고 경위

- 쉬는시간에 특별교실로 이동하던 중, 물기가 있는 미끄러운 복도에서 미끄러져 무릎 측면과 바닥이 부딪히며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학생에게 우천·청소 시간대에는 복도에서 뛰지 않고 천천히 이동하도록 반복 지도한다.
- 청소·우천 등으로 복도 바닥에 물기가 생기면 즉시 닦아내고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세운다.
- 물기가 많은 구간은 임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 동선을 안내한다.
- 비 오는 날에는 입구의 매트에 신발 바닥의 물기를 충분히 닦아낸 후 이동한다.

55

풋살 경기 중 헤딩 착지 과정에서 부딪혀 넘어지면서 무릎 부상

▪ 고등학교 1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풋살 경기 중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헤딩을 위해 점프한 학생이 착지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과 부딪혀 넘어지며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헤딩 연습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실시하고, 착지 시 무릎을 굽혀 충격을 분산하는 방법을 지도한다.
- 점프 동작이 많은 풋살·축구에서는 점프 중인 동료에게 접촉하지 않는다는 수칙을 강조한다.

56

하교 중 언덕길에서 미끄러져 무릎 부상

▪ 기타학교 2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하교 중 학교 앞 언덕길에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 미끄러운 곳에서 학생이 넘어지며 보도블럭에 무릎을 부딪쳐 골절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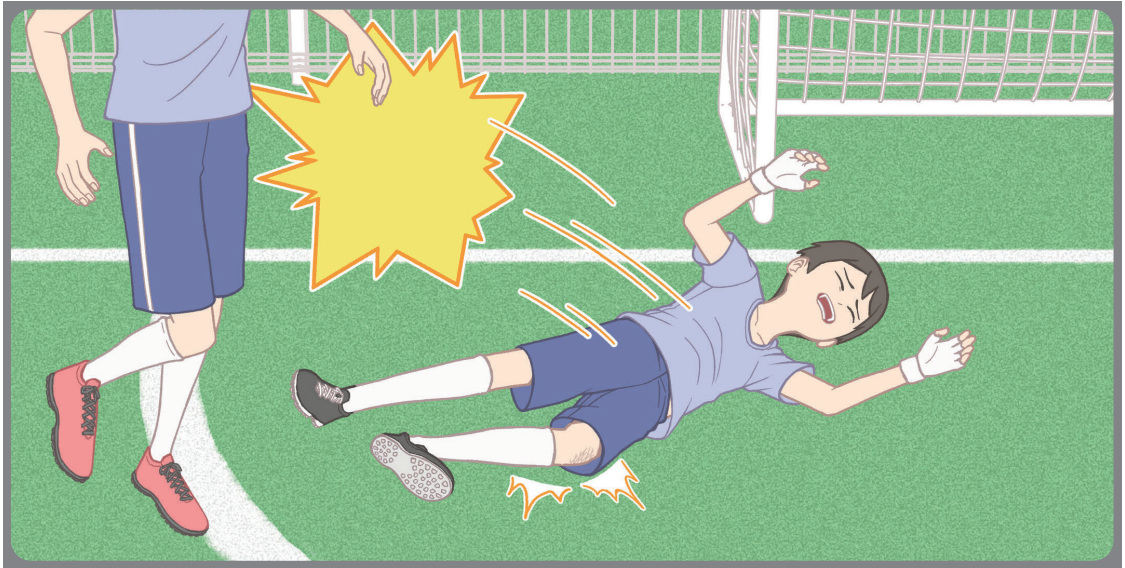
- 눈·비가 온 뒤 언덕길에서는 난간·울타리를 잡고 천천히 내려가도록 지도한다.
- 계절별 등·하굣길 안전수칙을 가정통신문과 안전교육 자료로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한다.
- 겨울철에는 통학로 결빙 구간을 점검해 염화칼슘 살포,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등 조치를 한다.
- 겨울철 보행 시, 주머니에서 손을 넣지 않으며 장갑을 착용한다.

57

풋살 경기 중 상대편과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져 무릎 부상

▪ 고등학교 2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석식시간에 친구들과 우레탄 축구장에서 풋살 경기를 하던 중, 골키퍼 역할을 맡은 학생이 아웃된 볼을 처리하기 위해 상대팀 공격수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밀려 옆으로 넘어지며 다리가 심하게 뒤틀려 무릎 부상을 입은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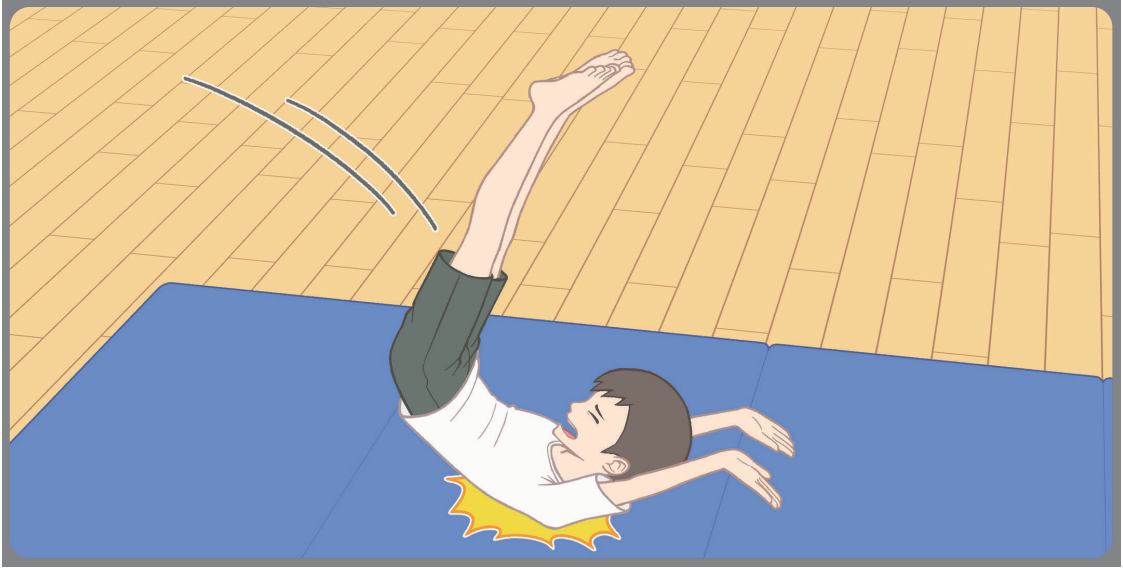
- 골키퍼 보호 규칙(공을 잡으려는 골키퍼에게無理하게 돌진하지 않기)을 사전에 안내한다.
- 자율 경기에서도 정식 규칙을 적용해 과도한 몸싸움과 밀치기를 금지한다.
- 충돌 시 옆으로 쓰러질 때 몸을 굴려 충격을 분산한다.

58

기계체조 텀블링을 하다가 매트에 등으로 떨어져 척추 골절

▪ 고등학교 2학년

▪ 낙상



사고 경위

- 체육시간에 기계체조 텀블링을 하던 중 매트 위에 등으로 떨어지며 척추가 골절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텀블링·공중돌기 등 고난도 기계체조는 전문 자격을 갖춘 지도교사 등의 지도 하에서만 실시한다.
- 학생 수준에 맞는 기술만 허용하고, 준비운동과 기초 동작 숙달 없이 난이도 높은 기술을 시도하지 않는다.
- 충분한 두께의 매트와 보조자를 배치해 낙상과 잘못된 착지를 즉시 보조한다.
- 목이나 허리에 근육통이 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無理하게 난이도 높은 동작을 시도하지 않는다.

59

피구를 하던 중 넘어져 무릎 부상

▪ 고등학교 1학년 ▪ 스스로 신체에 충격을 가함(염좌·삔임)



사고 경위

- 체육시간에 강당에서 피구를 하던 중, 리모델링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끄러운 바닥에서 급하게 몸을 움직이다가 넘어지며 무릎을 부딪쳐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주변 바닥 상태를 수업 전 점검하고, 미끄러운 구간은 사용을 제한하거나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 피구처럼 급격한 방향 전환이 많은 종목은 본인의 컨디션을 먼저 체크한다.
- 실내에서는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한다.
- 바닥이 미끄럽다고 느껴질 때는 보폭을 줄여 완만하게 방향을 바꾼다.

60

소이캔들 실습 중 비커가 깨져 허벅지 등 화상

▪ 고등학교 1학년

▪ 열, 전기에 의한 손상



사고 경위

- 소이캔들 만들기 실습을 하던 중 비커가 가열되다가 깨지면서 비커 안에 있던 뜨거운 내용물이 허벅지와 손등에 튀어 화상을 입은 사고

예방방안 및 안전수칙

- 실험·실습 전 반드시 실습복과 보안경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 가열 용기는 내열 유리·전용 비커만 사용하고, 금이 가거나 균열이 있는 비커는 사용하지 않는다.
- 비커는 직접 화기보다 중탕 등 안전한 방식으로 가열하고, 가열 중 비커를 손으로 잡지 않는다.
- 뜨거운 물질이 피부에 튀거나 화상을 입은 경우 즉시 흐르는 찬물로 충분히 식힌 후 심한 화상은 병원 치료를 받는다.

학교안전 중대사고 사례집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제16조 제1항 관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7. 21.>

등급	신체장애	노동력 상실률(%)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호가 필요한 사람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보아 줄 필요가 있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팔꿈치관절(肘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 8. 두 다리를 무릎관절(膝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	100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3. 두 팔을 손목관절(腕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발관절(足關節)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가 필요한 사람 6.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곁에서 돌보아 줄 필요가 있는 자	100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100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손가락 기능이 모두 용도 상실된 자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0

등급	신체장애	노동력 상실률(%)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 팔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 6.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80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나.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척추에 심한 변형이나 심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용도 상실된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이 용도 상실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와 검지를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70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나.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 한 손의 엄지와 검지를 상실한 자 또는 엄지나 검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와 검지를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8. 한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용도 상실된 자 12. 외모에 심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60

등급	신체장애	노동력 상실률(%)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자 3. 한 손의 엄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4. 한 손의 엄지와 검지가 용도 상실된 자 또는 한 손의 엄지나 검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용도 상실된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용도 상실된 자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12.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터가 남은 사람	50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半盲症)·시야협착(視野狹窄) 또는 시야이상(視野異常)이 남은 자 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6.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8. 척추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를 상실한 자 또는 검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10. 한 손의 엄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2.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용도 상실된 자 13. 생식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1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40

등급	신체장애	노동력 상실률(%)
제10급	1. 한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한 손의 검지를 상실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이외의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6. 한 손의 엄지가 용도 상실된 자 또는 검지를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외의 3개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9. 한 팔에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30
제11급	1. 두 눈의 안구(眼球)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애나 또는 현저한 운동 장애가 남은 자 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3.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변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검지가 용도 상실된 자 또는 엄지와 검지 이외에 2개의 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9. 흉복부 장기에 장애가 남은 자 10. 외모에 중등도(中等度)의 흉터가 남은 사람	20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애 또는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가슴뼈(胸骨)·늑골·어깨뼈(肩胛骨)나 또는 엉덩뼈(骨盤)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8. 팔과 다리의 긴 뼈에 기형이 남은 자	15

등급	신체장애	노동력 상실률(%)
제12급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용도 상실된 자 10. 한 발의 두 번째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두 번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12. 국부에 현저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5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자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상실한 자 5. 한 손의 엄지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검지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검지의 손톱 바로 밑의 관절(末關節)을 굽혔다 폈다를 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9. 한 발의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0. 한 발의 두 번째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또는 두 번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또는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10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6.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외의 손가락의 손톱 바로 밑의 관절을 굽혔다 폈다를 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세 번째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5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애 종합평가 등급표 (제1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7. 21.>

등급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4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3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2	12	11	10	10	9	8	7	6	5	4	3	2	1
11	11	10	10	10	9	8	7	6	5	4	3	2	1
10	10	9	9	9	9	8	7	6	5	4	3	2	1
9	9	8	8	8	8	8	7	6	5	4	3	2	1
8	8	7	7	7	7	7	6	5	4	3	2	1	1
7	7	6	6	6	6	6	5	5	4	3	2	1	1
6	6	5	5	5	5	5	4	4	4	3	2	1	1
5	5	4	4	4	4	4	3	3	3	2	1	1	1
4	4	3	3	3	3	3	2	2	2	1	1	1	1
3	3	2	2	2	2	2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1	1	1	1	1	1

(주) 별표 2.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따른 등급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신체장애인은 이 표에 따라 5급이 되고, 다시 9급이 경합될 때에는 이 표에 따라 4급이 된다.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제17조제1항 관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3. 22.>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상시간병급여 (常時看病給與)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애가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애가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애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수시간병급여 (隨時看病給與)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애가 장애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애외의 장애가 장애등급 제1급(조정장애 포함)에 해당하는 자 -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애가 장애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애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참고: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 요양소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신체장애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제19조 관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7. 21.>

구분		금액
가. 피해자 본인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2천만원
	그 밖의 경우	2천만원×노동력상실률
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사람을 포함한다),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하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 (주)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제19조 관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7. 21.>

구분		금액
가. 피해자 본인		2천만원
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사람을 포함한다),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하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 (주)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

학교안전법 상 장애등급 판정 세부기준

학교안전법 상 장애등급 판정 세부기준 [별표]

1. 눈의 장애

가. 시력의 장애

1) 시력의 측정

가) 시력의 측정은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만으로 시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視標)를 사용하는 시시력표(試視力表) 등 다른 시력 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시력의 측정은 최소 3회 이상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는 제외한다)으로 측정된 최대교정 시력으로 한다. 다만, 상(像)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증상(부등상증:不等像症)이 생겨 두 눈으로 보기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

2) 장애의 등급

가) 영 별표2에서 "실명"이란 안구를 상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2에서 "안구(眼球)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애가 남은 자"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사람은 장애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영 별표2에서 "안구(眼球)에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란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한 눈으로 보는 시야각의 정상각도는 약 50°, 두 눈으로 보는 시각의 정상각도는 약 45°를 말한다.

라) 영 별표2에서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자"란 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각도의 60퍼센트 이하로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시야는 자동시야계 또는 수동시야계로 측정하며, 절대암점을 채용하고 비교암점을 채용하지 않는다.

나. 눈꺼풀의 장애

1) 영 별표2에서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란 누워서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넓이의 2분의 1 이상이 노출되고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2에서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란 누워서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넓이의 2분의 1 미만이 노출되고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1) 및 2)에서 만성 활동성 각막염증은 플루레신 검사 등으로 염증이 계속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4) 영 별표2에서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란 보통으로 눈을 떴을 경우 눈동자를 완전히 덮어 버리거나 눈을 감았을 경우 눈동자를 완전하게 덮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안구에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거나 정면시(正面視)에서 겹보임(복시)이 발생

하여 두 눈으로 보면 뚜렷한 두통·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좌시·우시·상시·하시 등에서만 겹보임이 발생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지 않지만 경도의 두통이나 안정(眼精)피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3) 외상성 동공확대(산동:散瞳)

가) 한쪽 눈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의 장애에 따른 눈부심(수명:羞明)으로 노동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나) 한쪽 눈 동공의 대광반사기능이 불충분하여 눈부심으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다) 두 눈이 가)에 해당되면 제11급을 인정한다.

라) 두 눈이 나)에 해당되면 제12급을 인정한다.

마)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객관적 진단을 위해 동공크기의 촬영(명순응과 암순응 모두), 자동동공측정(pupillometer) 또는 적외선촬영사진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바) 외상성 동공확대와 시력장애 또는 조절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장애 등급 하나를 인정한다.

2. 귀의 장애

가. 청력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애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 $\{(a+2b+2c+d)/6\}$ 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

(a:500Hz, b:1,000Hz, c:2,000Hz, d:4,000Hz)

나) 어음명료도 평가는 단음절표(최소 50개)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어음인지역치보다 30~40dB 더 높은 레벨 또는 최저레벨에서 검사 강도를 조정하여 제시하고 평가한다. 어음명료도 검사는 각 단음절어 개수에 따른 정반응률을 백분위로 표시하여 결정한다. 3회를 시행하여 가장 양호한 수치로 정한다.

다)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성 청기장애(急性 音響性 聽器障害)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다.

라)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요양 종결 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마)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청력역치는 청성뇌간반응검사로 신뢰성이 확인되어야 이를 인정하되,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청성지속반응검사로 갈음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신뢰성을 확인한다.

2) 장애등급 판정 기준

영 별표2에 따른 장애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청력역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

가) 영 별표2에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란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 또는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2에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란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 또는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 영 별표2에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란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인 경우 또는 청력 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라) 영 별표2에서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란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6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마) 영 별표2에서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란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나. 귓바퀴의 장애

영 별표2에서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란 귓바퀴의 3분의 2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고막의 외상성 뚫림(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귀 고름(이루:耳漏)은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청력장해가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항상 귀 고름이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내이의 손상으로 발생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애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가) 평형기능에 장애는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애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14
	양측 전정기능 감소	10
	일측 전정기능 소실	4
치료 병력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기능 장애 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20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다만,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m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다만,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m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8

나) 평형기능의 장애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 (1) 뇌영상검사(CT, MRI)
- (2) 냉온고대 온도안진검사를 포함한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비디오두부충동 검사 등
- 3) 내이의 기능장애로 평형기능장애와 청력장애가 동시에 남은 경우 높은 장애 등급 하나를 인정한다.
- 4) 노동능력은 있으나 평형기능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인정되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다만, 운동실조증(失調症) 및 평형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내이의 손상으로 발생한 평형기능 장애는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코의 장애

가. 외부 코는 비골(鼻骨)·비연골(鼻軟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및 피하조직을 말한다.

나. 영 별표2에서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란 외부 코의 3분의 2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다.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는 제14급(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을 적용한다. 다만 후각기능을 부분적으로 잃은 경우(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4. 입의 장애

가. 언어 기능의 장애

1) 영 별표2에서 "언어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 상 자음 정확도가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2) 영 별표2에서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이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 상 자음 정확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 상 표현 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다) 언어평가 상 수용 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3) 영 별표2에서 "언어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이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 상 자음 정확도가 75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 상 표현 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다) 언어평가 상 수용 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4) 언어의 기능 장애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5)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언어의 기능 장애(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는 기능의 장애는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등급 하나만 인정한다.

나. 씹는 기능의 장애

- 1) 씹는 기능의 장애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입벌림(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영 별표2에서 "씹는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란 심한 입벌림운동 제한이나 씹기(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영 별표2에서 "씹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뚜렷한 입벌림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씹기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위 · 아래턱(상 · 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입벌림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 · 아래턱(상 · 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삼킴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삼킴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4) 영 별표2에서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약간의 입벌림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 나) 위 · 아래턱(상 · 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입벌림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 · 아래턱(상 · 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삼킴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삼킴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5) 입벌림장애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입벌림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입벌림상태에서 위 · 아래턱(상 · 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 가능한 인접 치아 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 치아의 장애

- 1) 영 별표2에서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자"란 상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사람을 말한다.
- 2) 틀니(총의치나 국소의치, 유상의치:有床義齒) 또는 브릿지(가교의치:架橋義齒)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클라스크나 여태치먼트가 걸리는 치아 또는 포스트 · 인레이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아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3) 상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으로 상실된 치아의 수와 의치의 치아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상실된 치아의 수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 4) 영구치로 대체되는 어린이의 유치는 장애판정 대상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 준용등급 결정

- 1) 식도의 좁아짐(협착), 혀의 이상, 인후지배신경의 마비 등으로 생기는 삼킴(연하:嚥下)장애에 대하여는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씹는 기능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인정한다.

2) 미각(味覺)상실

- 가) 두부 외상, 그 밖에 턱 주위 조직의 손상과 혀의 손상으로 생긴 미각상실에 대하여는 제14급을 인정한다.
- 나) 미각장애는 테스트 페이퍼와 각종 약물검사 결과가 모두 무반응일 경우에만 미각상실로 인정하고, 그 정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애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다) 미각장애에 대하여는 요양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후 등급을 결정한다.
- 3) 성대마비로 뚜렷한 쉼 목소리가 남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5.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의 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애

- 1) 영 별표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란 뚜렷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뚜렷한 치매, 정신과 의식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2) 영 별표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란 뚜렷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신과 의식의 장애,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애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3) 영 별표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2)에 해당되는 장애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뚜렷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대뇌 또는 소뇌기능의 장애,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애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4) 영 별표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만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5) 영 별표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의한 정신기능 장애가 취업 가능한 직종범위를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나) 뇌전증(腦電症)발작이나 전정기능장애 또는 소뇌기능장애로 인한 평형기능장애 또는 운동실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경도의 사지 단(單)마비(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 6) 영 별표2에서 "국부에 현저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애, 추체로(錐體路)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재해와 관련된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 7) 영 별표2에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증상("학교안전법"시행령 12급에 기술된 현저한 신경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신경증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 · 현기증 ·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 8) 영 별표2에서 "반신불수 (hemiplegia [의학용어 사전 상 반신마비 또는 편마비에 해당되며, hemiparesis [의학용어 사전 상 불완전마비 또는 반부전마비]와 구분되는 완전 반신마비)"는 같은 편의 팔과 다리가 완전 마비로 못쓰게 된 사람을 말한다. 근력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불완전마비나 반부전마비는 각 팔다리의 관절 기능의 장애로 평가한다.

나. 척수의 장애

- 1)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을 인정한다.
- 2)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
- 3)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 4)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에서 2분의 1 정도만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 5)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 6)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다.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애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 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다.

라. 운동실조증(失調症) 및 평형기능장애

- 1) 뚜렷한 운동실조증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외에는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 2) 중등도의 운동실조증 또는 평형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이 명백하게 일반인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 3)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객관적으로 안구진탕증이나 그 밖에 평형기능검사 결과 명백한 이상 소견이 인정되는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 4) 노동능력은 있으나 객관적인 안구진탕증이나 그 밖에 평형기능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인정되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마. 동통 등 감각이상

-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 2) 작열통(灼熱痛)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바. 외상성 신경증

외상 사고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사. 그 밖의 특징적인 장애

외상성 뇌전증의 치유 시기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요양으로 발작 횟수가 안정된 때로 하고, 장애등급은 발작 횟수, 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비발작 시의 정신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매주 1회 이상 의식장애가 수반되는 발작 또는 뚜렷한 정신기능의 장애로 평생 동안 어떤 노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충분한 치료란 항전간제를 포함한 치료를 의미하며, 뇌전증 횟수 및 양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 2)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1개월에 1회 이상의 의식장애가 수반되는 발작이 있거나 발작형태의 특징 때문에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또는 뇌전증의 특수성으로 보아 취업가능한 직종이 뚜렷하게 제한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 3) 지속적인 약물복용을 하여야만 수개월에 1회 정도 의식장애가 수반되는 발작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 발작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뇌파상 명백하게 뇌전증성 극파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아. 준용등급 결정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서 장애등급기준에 해당 부위의 기능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6. 흉터의 장애

가. 흉터의 측정

- 1) 두부, 안면부, 경부를 하나의 장애부위로 보고 팔과 다리를 별도 부위로 하여 흉터 장애를 장애계열로 하여 장애등급을 정한다.
- 2) 영 별표2에서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肥厚)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線像癍痕), 면상반흔(面像癍痕) 및 조직함몰(組織陷沒)이 남은 것을 말한다.
- 3) "선상반흔"이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면상반흔"이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을,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 부위가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것을 각각 말한다.
- 4) 선상반흔의 길이는 그 모양에 따라 실제 길이를 측정하고,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의 넓이는 반흔 또는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부위를 가로와 세로로 구분하여 가로 방향의 길이와 그에 수직하는 세로 방향의 가장 긴 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에 따른 봉합사(縫合絲)의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는다.

- 5) 2개 이상의 선상반흔 또는 면상반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하나의 선상반흔 또는 면상반흔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그 길이 또는 면적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 6) 하나의 흉터에 선상반흔과 면상반흔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선상반흔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면상반흔(선상반흔을 포함하되, 선상반흔의 폭을 1센티미터로 하여 넓이를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 7) 하나의 흉터에 면상반흔과 조직함몰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조직함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면상반흔(조직함몰 부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 8) 외모 중 두부·안면부 및 경부(頸部) 등의 각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각 부위별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흉터가 두부·안면부 및 경부 중 2개 이상의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두부 또는 경부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2분의 1을 안면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하거나, 안면부에 있는 흉터의 2배를 두부 또는 경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할 수 있다.

나. 외모의 흉터

- 1) 영 별표2에서 "외모"란 두부·안면부(눈꺼풀·귓바퀴·코를 포함한다) 및 경부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며, 두부와 안면부의 경계는 이마에 주름이 지어지는 가장 윗부분으로 한다.
- 2) 영 별표2에서 "외모에 심한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 3) 영 별표2에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4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 4) 영 별표2에서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8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 5) 영 별표2에서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는 남은 사람을 말한다.
- 6) 외모의 흉터 중 선상반흔·면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눈썹이나 머리카락 등으로 감추어지거나 흉터가 턱 밑 등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7) 두개골에 골 결손이 남은 경우에는 6)에도 불구하고 그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두개골의 성형수술 후에 판정한다.
- 8) 외모의 흉터는 흉터수술이나 치료 또는 재건수술 후에도 남아 있는 흉터에 대해 장해등급을 판정한다.

다. 노출된 면의 흉터

- 1) "노출된 면"이란 팔의 경우에는 손바닥 및 손등을 포함한 팔꿈치관절 이하, 다리의 경우에는 발등을 포함한 무릎관절 이하를 말한다.

- 2) 두 팔이나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9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은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 3) 두 팔이나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5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은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 4) 영 별표2에서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란 환자 본인의 손바닥을 기준으로 한다.

7.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 흉부장기의 장애

- 1) 영 별표2에서 "흉복부 장기" 중 흉부장기는 심장 및 인접 대혈관(흉부대동맥 및 흉부 대동맥 주요 분지와 흉부 대정맥 포함) · 심낭 · 폐장 · 늑(흉)막 · 횡격막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애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 2) 영 별표2에서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보아 줄 필요가 있는 자"란 뚜렷한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영 별표2에서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곁에서 돌보아 줄 필요가 있는 자"란 뚜렷한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영 별표2에서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란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5) 영 별표2에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란 중등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에서 2분의 1 정도만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6) 영 별표2에서 "흉복부 장기에 장애가 남은 자"란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신장장애

- 1) 요로(尿路) 변경술 후 신장색질(신루:腎癢), 신우색질(신우루:腎盂癢), 요관피부문합(尿管皮膚吻合), 요관장문합(尿管腸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된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 2) 명백히 상처에 따른 만성신우증(신장염), 수신증(水腎症)이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 3) 요양의 종결 단계에서 요도색질(요도루:尿道癢) · 방광누공(膀胱癢孔)과 여러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누공(癢孔)이 남아 일정한 기간 후에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된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 4) 방광괄약근(膀胱括約筋)의 변화로 인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尿失禁)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다. 방광장애

- 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 2)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인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 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라. 요도협착

- 1) 실모양(사상:絲狀) 부지(Bougie)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 2) 요도협착으로 신장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애로 간주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마. 생식기장애

- 1) 영 별표2에서 "양쪽 고환을 상실한 자"란 양쪽 고환이 결손된 사람을 말한다.
- 2) 영 별표2에서 "생식기의 현저한 장애"란 음경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뚜렷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사람을 말한다.
- 3) 음위(陰萎, impotence)가 다른 장애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 등급을 인정한다.
- 4) 가벼운 요도협착, 음경의 반흔 또는 경결(硬結) 등으로 인한 음위가 있는 사람과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음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준용등급 결정

- 1) 요도협착 장애 중 요도 부지(Bougie) 프렌치 제20번(네라톤 카테터 제11호 상당)이 겨우 통과하고 때때로 확장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 2) 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위축은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8. 척추 등의 장애

가. 척추의 장애

- 1) 척추의 운동 단위는 아래와 같이 정의 한다.

운동단위	구분	범위
목뼈부 (경추부)	분절	후두과 - 경추 1번 분절부터 경추 7번 - 흉추 1번 분절까지
	추체	경추 1번부터 경추 7번까지
등뼈부 (흉추부)	분절	흉추 1번 - 2번 분절부터 흉추 11번 - 12번 분절까지
	추체	흉추 1번부터 12번까지
허리뼈부 (요추부)	분절	흉추 12번 - 요추 1번 분절부터 요추 5번 - 천추 1번 분절까지
	추체	요추 1번부터 천추 1번까지

- 2) 척추의 장애 평가 시 운동 단위(목뼈부(경추부), 등뼈부(흉추부), 허리뼈부(요추부))별로 위 1)의 표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으로 평가하며 두 운동단위에 걸쳐 운동 장애가 있으면 합산하지 않고 가장 중한 운동 단위의 장애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예, 등허리뼈부(흉요추부) 운동 장애가 있을 경우 등뼈부(흉추부)와 허리뼈부(요추부) 각각 장애 평가 후 장애율이 높은 운동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 3) 척추 골절의 압박률 측정은 골유합이 이루어진 후 단순 방사선 측면 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며, 척추 골절의 압박률 측정 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 가) 인접 상, 하부 척추체에 골절이 없는 경우: 인접 상, 하부 정상 척추체의 전방 척추체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의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 나) 인접 상, 하부 척추체에 골절이 친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 골절이 있는 경우: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부와 하부의 정상 척추체의 전방 척추체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의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발성 척추 골절은 이때 구해진 각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 한다.
- 4) 영 별표2에서 "척추에 심한 운동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한 운동 단위(목뼈부(경추부), 등뼈부(흉추부), 허리뼈부(요추부)) 전체가 고정되어 운동 가능 영역이 100퍼센트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단 장애의 운동 단위가 등뼈(흉추)인 경우는 영 별표2의 노동능력상실률표의 10분의 6 만 적용한다.
- 5) 영 별표2에서 "척추에 뚜렷한 운동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한 운동단위 내에 운동 가능 영역이 50퍼센트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단 장애의 운동 단위가 등뼈(흉추)인 경우는 영 별표2의 노동능력상실률표의 10분의 6 만 적용한다.
- 6) 영 별표2에서 "척추에 운동 장애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한 운동단위내에 운동 가능 영역이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된 사람 또는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단 장애의 운동 단위가 등뼈(흉추)인 경우는 영 별표2의 노동능력상실률표의 10분의 6 만 적용한다.
- 7) 영 별표2에서 "척추에 심한 변형이 남은 사람"이란 한 운동 단위 내에 3개 이상의 다발성 척추체의 골절이 있고, 압박률이 40퍼센트 이상 되는 척추체가 2개 이상 있으면서 그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9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8) 영 별표2에서 "척추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이란 한 운동 단위 내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20퍼센트 이상이면서 다른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9) 영 별표2에서 "척추에 변형이 남은 사람"이란 한 운동 단위 내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20퍼센트 이상이면서 다른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
- 10) 한 운동 단위 내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10 퍼센트 이상이면서 다른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제14급을 준용한다. 20퍼센트 미만의 압박률은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고정술 따른 운동장애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미골골절에 대해서는 변형장애로 취급하지 아니하나 골절에 따른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 장애등급 제14급을 준용 한다.
- 12) 척추 변형 또는 운동 장애가 남고 척수 또는 신경 마비로 다른 부위 기능장애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기 장애 중 장애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 하나만 인정하되, 척수손상과 같이 중한 신경계통의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장애로서 인정한다.

- 13) 척주에 운동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척주의 운동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 기능장해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나.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

- 1) 체간골이란 영 별표2에서 "쇄골 · 가슴뼈(胸骨) · 늑골 · 어깨뼈(肩胛骨)나 또는 엉덩뼈(骨盤)"를 말하며 쇄골 · 가슴뼈(胸骨) · 늑골 · 어깨뼈(肩胛骨)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 2) 영 별표2에서 "엉덩뼈(骨盤)"란 제2천추 이하의 천골(엉치뼈), 장골, 좌골(궁둥뼈), 미골(꼬리뼈)을 포함한다.
- 3) 영 별표2에서 "엉덩뼈(骨盤)에 현저한 기형"이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4) 영 별표2에서 "쇄골 · 가슴뼈(胸骨) · 늑골 · 어깨뼈(肩胛骨)에 현저한 기형"이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5) 늑골(갈비뼈)의 변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 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 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호흡기능 검사상 이상이 있는 경우 인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 1) 영 별표2에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란 견갑골에서 절단 또는 어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사람 또는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 2) 영 별표2에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란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 3) 영 별표2에서 "팔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각 관절에서 모두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한다.
- 4) 영 별표2에서 "관절이 용도 상실된 자"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사람을 말한다.
- 5) 영 별표2에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 6) 영 별표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요골두 치환술 포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7) 팔꿈치 관절의 동요는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나 적절한 수술 후에도 건축 팔꿈치 관절에 비해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상 10도 이상의 불안정성이 있으면 영 별표2에서 "한 팔의 3대 관절 중에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로 인정한다.
- 8) 선천성을 제외한 재발성 탈구가 있는 사람은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나 적절한 수술 후에도 탈구가 계속된다면 영 별표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로 인정한다.

- 9) 영 별표2에서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 10) 영 별표2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이란 요골 또는 척골 중 어느 한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 11) 영 별표2에서 "팔의 긴 뼈에 변형(기형)이 남은 자"이란 상완골의 변형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각형성, 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경우 (30도 이상의 각형성)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 12) 팔의 장해 골절부에 내고정물 등이 있어 장해의 원인이 된 때에는 내고정물 제거 후 장해를 평가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

- 1) 영 별표2에서 "손가락을 상실한 자"란 엄지손가락은 손가락관절(지간 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근위 지간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손허리뼈(중수골) 또는 몸쪽 손가락뼈(근위 지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근위 지간 관절(엄지손가락은 지간 관절)에서 근위 지골과 중위 지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 2) 영 별표2에서 "손가락뼈의 일부를 상실한 자"란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것이 방사선 사진으로 명백한 사람 또는 유리골편(遊離骨片)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섬유성 유합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영 별표2에서 "손가락 기능이 용도 상실된 자"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간 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원위 지간 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 관절 또는 근위 지간 관절(엄지손가락은 지간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 4) 영 별표2에서 "손톱 바로 밑의 관절을 굽혔다 폈다를 할 수 없는 자"란 원위 지간 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굽히고 펴는 근육(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원위 지간 관절)을 능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 1) 영 별표2에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란 골반골에서 절단 또는 골반골과 대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고관절과 무릎관절과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무릎관절에서 대퇴골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 2) 영 별표2에서 "다리를 발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또는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하며 같은 장애로 인정한다.
- 3) 영 별표2에서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란 족근골(종골 · 거골 · 주상골과 3개의 설상골을 말한다)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중족골과 족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 4) 영 별표2에서 "다리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란 3대 관절(고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과 발가락 모두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모두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 5) 영 별표2에서 "관절이 용도 상실된 자"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사람을 말한다. 단 발목 관절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해당 노동능력 상실률의 2분의 1을 인정한다.
- 6) 영 별표2에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단 발목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경우 해당 노동능력 상실률의 2분의 1을 인정한다.
- 7) 영 별표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단 발목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경우 해당 노동능력 상실률의 2분의 1을 인정한다.
- 8) 슬관절의 동요
 - 가) 슬관절 동요관절 장애평가는 동요관절 측정기(Arthrometer: KT 1000, 2000, GNRB, Kneelax),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 같은 객관적 검사와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되 동요관절 정도는 동요관절 측정기(arthrometer)의 그 검사 결과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는 TELOS기기를 이용하여 각도(전방 동요는 20-30도 굴곡, 후방 동요는 90도 굴곡, 측방 동요는 20-30도 굴곡)를 정확하게 지정하여 측정한다.
 - 나) 동요도는 건(健)측과 환(患)측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동요관절로 인정하되, 양측 무릎에 동요 관절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 추정치(7mm)를 기준으로 7mm 뺀 그 차이를 동요 관절 정도로 인정하고, 전방, 후방, 측방동요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심각한 동요를 기준으로 한다.
 - 다)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재수술을 하였음에도 15mm 이상의 동요가 남고(재파열 제외) 추가적인 수술로 동요의 개선이 예상되지 않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보조기 장착이 필요한 경우 영 별표 2에서 "한 다리의 3대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로 인정한다.
 - 라)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보조기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무릎관절의 동요가 10mm 이상 남은 경우는 영 별표 2에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로 인정한다. 10mm 이상일 경우 적절한 수술적 치료(또는 기 수술된 상태라면 재수술) 후 증상이 고정된 경우로 판단한다.
 - 마)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보조기가 필요하고 무릎관절에 동요가 5mm이 상 10mm 미만인 경우는 14급을 인정한다.
 - 바) 상병상태(인대파열의 정도 등), 치료방법(수술횟수 및 내용) 및 이학적 검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 검사결과 상 동요관절 측정치가 확인되더라도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치를 배제하고 등급 판정이 가능하다.
- 9) 발목 관절의 동요는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나 적절한 수술 후에도 동요가 남은 경우는 타동적 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2에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에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로 인정한다. 항상 보조기 착용이 필요 없는 경우 동요 장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0) 선천성을 제외한 다리의 재발성 탈구가 있는 사람은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나 적절한 수술 후에도 탈구가 계속된다면 영 별표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로 인정한다.

- 11) 영 별표2에서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경골과 비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 12) 영 별표2에서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란 비골은 이상이 없고 경골에만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 13) 영 별표2에서 "다리의 긴 뼈에 기형이 남은 자"란 대퇴골의 변형 또는 경골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다리의 긴 뼈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 없이 유착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14) 다리의 장해 골절부에 내고정물 등이 있어 장해의 원인이 된 때에는 내고정물 제거 후 장해를 평가한다.

나. 발가락의 장해

- 1) 영 별표2에서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자"란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 2) 영 별표2에서 "발가락이 용도 상실된 자"란 엄지발가락은 발가락관절(지간 관절(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쪽발가락뼈마디관절(원위 지간 관절(말절골))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 관절) 또는 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근위 지간 관절(엄지발가락은 지간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 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11. 각 등급의 신체장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그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해당 등급의 신체 장해로 본다.

12.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다음과 같다.

관절명	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척추 (등골뼈)	목뼈부 (경추부)	후두과 - 경추1번 분절	13
		경추1번 - 경추2번 분절	10
		경추2번 - 경추3번 분절	8
		경추3번 - 경추4번 분절	13
		경추4번 - 경추5번 분절	12
		경추5번 - 경추6번 분절	17
		경추6번 - 경추7번 분절	16
		경추7번 - 흉추1번 분절	6
	등뼈부 (흉추부)	흉추1번 - 흉추2번 분절	4
		흉추2번 - 흉추3번 분절	4
		흉추3번 - 흉추4번 분절	4
		흉추4번 - 흉추5번 분절	4
		흉추5번 - 흉추6번 분절	4
		흉추6번 - 흉추7번 분절	5
		흉추7번 - 흉추8번 분절	6
		흉추8번 - 흉추9번 분절	6
		흉추9번 - 흉추10번 분절	6
		흉추10번 - 흉추11번 분절	9
		흉추11번 - 흉추12번 분절	12

관절명		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척주 (등골뼈)	허리뼈부 (요추부)	흉추12번 - 요추1번 분절		12
		요추1번 - 요추2번 분절		12
		요추2번 - 요추3번 분절		14
		요추3번 - 요추4번 분절		15
		요추4번 - 요추5번 분절		17
		요추5번 - 천추1번 분절		20
어깨관절 (견관절 : 肩關節)		앞위쪽올리기(전상방거상:前上方舉上)		150
		옆위쪽올리기(측상방거상:側上方舉上)		150
		뒤쪽올리기(후방거상:後方舉上)		40
		모으기(내전:內轉)		30
		안쪽돌리기(내회전:內回轉)		40
		바깥쪽돌리기(외회전:外回轉)		90
팔꿈치관절 (주관절 : 肘關節)		펴기(신전:伸展)		0
		굽히기(굴곡:屈曲)		150
		안쪽돌리기(내회전:內回轉)		80
		바깥쪽돌리기(외회전:外回轉)		80
손목관절 (수근관절 : 手根關節)		손등쪽 굽히기(배굴:背屈)		60
		손바닥쪽 굽히기(장굴:掌屈)		70
		손목의 요골(노뼈:橈骨) 쪽 굽히기(요사위:撓斜位)		20
		손목의 척골(자뼈:尺骨) 쪽 굽히기(척사위:尺斜位)		30
손허리손가락관절 (중수지관절 : 中手指關節)		엄지 손가락	펴기(신전:伸展) 굽히기(굴곡:屈曲)	0 60
		둘째 손가락	펴기(신전:伸展) 굽히기(굴곡:屈曲)	0 90
		가운데 손가락	펴기(신전:伸展) 굽히기(굴곡:屈曲)	0 90
		넷째 손가락	펴기(신전:伸展) 굽히기(굴곡:屈曲)	0 90
		새끼 손가락	펴기(신전:伸展) 굽히기(굴곡:屈曲)	0 90
손가락관절 (지간 관절 : 指間關節)		엄지 손가락	펴기(신전:伸展) 굽히기(굴곡:屈曲)	0 80
		둘째 손가락	펴기(신전:伸展) 굽히기(굴곡:屈曲)	0 100
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 (근위 지간 관절 : 近位 指間關節)		가운데 손가락	펴기(신전:伸展) 굽히기(굴곡:屈曲)	0 100
		넷째 손가락	펴기(신전:伸展) 굽히기(굴곡:屈曲)	0 100
		새끼 손가락	펴기(신전:伸展) 굽히기(굴곡:屈曲)	0 100

관절명	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원위 지간 관절 : 遠位 指間 關節)	둘째 손가락	펴기(신전:伸展) 굽히기(굴곡:屈曲)	0 70
	가운데 손가락	펴기(신전:伸展) 굽히기(굴곡:屈曲)	0 70
	넷째 손가락	펴기(신전:伸展) 굽히기(굴곡:屈曲)	0 70
	새끼 손가락	펴기(신전:伸展) 굽히기(굴곡:屈曲)	0 70
엉덩관절 (고관절 : 股關節)	펴기(신전:伸展) 굽히기(굴곡:屈曲)		30 100
	모으기(내전:內轉)		20
	벌리기(외전:外轉)		40
	안쪽돌리기(내회전:內回轉)		40
	바깥쪽돌리기(외회전:外回轉)		50
무릎관절 (슬관절 : 膝關節)	펴기(신전:伸展) 굽히기(굴곡:屈曲)		0 150
발목관절 (족관절 : 足關節)	발등쪽 굽히기(배굴:背屈)		20
	발바닥쪽 굽히기(척굴:蹠屈)		40
	바깥쪽 뒤집기(외번:外翻)		20
	안쪽 뒤집기(내번:內翻)		30
발허리발가락관절 (중족지 관절 : 中足趾 關節)	엄지 발가락	발등쪽 굽히기(배굴) 발바닥쪽 굽히기(척굴)	50 30
	둘째 발가락	발등쪽 굽히기(배굴) 발바닥쪽 굽히기(척굴)	40 30
	가운데발가락	발등쪽 굽히기(배굴) 발바닥쪽 굽히기(척굴)	30 20
	넷째 발가락	발등쪽 굽히기(배굴) 발바닥쪽 굽히기(척굴)	20 10
	새끼발가락	발등쪽 굽히기(배굴) 발바닥쪽 굽히기(척굴)	10 10
발가락관절 (지간 관절 : 趾間 關節)	엄지 발가락	펴기(신전:伸展) 굽히기(굴곡:屈曲)	0 30
	둘째 발가락	펴기(신전:伸展) 굽히기(굴곡:屈曲)	0 40
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근위 지간 관절 : 近位 趾間 關節)	가운데발가락	펴기(신전:伸展) 굽히기(굴곡:屈曲)	0 40
	넷째 발가락	펴기(신전:伸展) 굽히기(굴곡:屈曲)	0 40
	새끼발가락	펴기(신전:伸展) 굽히기(굴곡:屈曲)	0 40

학교안전 중대사고 사례집

발 행 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발 행 일	2026년 2월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4 KC TOWER 7,8층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전화번호	02-793-5015
홈페이지	www.ssif.or.kr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이에 대한 무단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단 복제·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에 의한 권리의
침해죄, 부정발행 등의 죄,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6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All rights reserved.

학교안전 종대사고 사례집